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33-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9.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9. 23.

한국법제연구원
김 기 표 원 장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수 관 (군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김 경 미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오 주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행정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9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9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 2 장 과징금 제도의 의의와 현황	11
I. 과징금 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11
1. 과징금의 의의	11
2. 과징금의 유형	14
3. 과징금의 법적 성질	15
4. 형벌과의 관계	16
II.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일반 현황	16
1. 과징금 제도의 도입	16
2. 과징금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18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25
I. 수산업분야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25
1.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입법연혁	25
2.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40
3. 주요 규정내용과 고려점	44
II.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기준의 문제점	52
1. 어업소득과의 괴리	52
2. 업종별·규모별 차별적 적용 미흡	53
3.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미흡	56
4. 타 제재수단과 중복성	58
III.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59
1. 분석의 대상	59

2. 과징금 부과 기초자료 분석	62
IV. 과징금 부과기준의 산정	71
1. 물가상승률 고려안(제1안)	71
2. 어업소득 고려안(제2안)	74
3.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안(제3안)	76
4. 복합적 고려안(제4안)	79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종합안	81
제 4 장 「수산업법」상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	83
I. 과징금 부과기준 재조정방안	83
II. 수산업법상 과징금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87
1. 입법형식상 일반기준의 설정을 통한 부과기준 명확화	87
2. 과징금 부과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87
3.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제재수단 간 병과의 회피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88
4. 대형트롤 어업의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94
제 5 장 요약 및 결론	95
참 고 문 헌	99

《부 록》

【부록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103
【부록 2】 과징금 산정 참고 입법례	167
【부록 3】 교육기관 관련 참고 입법례	181
【부록 4】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	197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대에 들어 국가의 행정활동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국가적 사회·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각 행정영역별 조정과 통제작용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는 현대행정의 복리성, 급부성, 적극성의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질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무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으로 입법화 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의미한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와 법령에서 규정한 제재적 처분 간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업 분야에서도 어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대체 납입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¹⁾ 이는 과징금이 업종별, 어선 규모별로 어업정지 1일당 1~19만원으로 어업소득에 비해 너무 낮아 위반조업 적발시 과징금만 납부하면 조업 가능(면세유류 공급)하다는 의식 팽배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간 형평성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어업소득, 업종 및 어선규모, 어획강도, 위반횟수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과징금 대체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은 총804건으로 과징금대체가능단속건수에서 4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654건으로 48%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537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본 보고서 [부록1] 참조.

이러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제도를 어업소득, 업종 및 어선규모, 어획강도, 위반횟수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산업법」에서는 행정관청이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어획물운반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과 그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징금제도는 1996년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 어업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행 「수산업법」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및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입법배경 및 목적, 어업의 종류·규모별 생산량과 생산액 분석, 어업소득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 타법령과의 체계성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과징금제도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업종별, 규모별 생산량 및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경제분석을 통하여 어업소득에 적합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산부문 과징금 부과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수협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근해어업(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의 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어획물운반업 등에 대한 경영분석 자료를 기초로 과징금 부과기준 재조정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과징금 제도의 의의와 현황

I. 과징금 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과징금의 의의

(1) 과징금의 개념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수단이며, 벌이 아닌란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되며,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집행벌)과 구별된다.²⁾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과 같은 수단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공급거부 등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였다.³⁾⁴⁾

이 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개념정의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⁵⁾

(2) 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벌금 및 과료

벌금이란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현행법상 과료·몰수와 함께 재산

2)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445면. 대법 2002.5.28. 선고 2000두6121판결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벌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1, 454면.

4) 헌재 1994.6.30. 92바38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대판 2001.2.9. 2000두6206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형을 이룬다. 벌금과 과료의 구별은 단지 그 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나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그 부과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일정한 종류의 과징금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하지만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나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는 점, 과징금부과자는 정수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지 아니하나 벌금부과자는 정수금액이 과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다르다.⁶⁾

2) 과태료

일반적으로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도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라고 할 수 있다.

과태료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과징금은 금전벌의 특수한 형태로서 과태료와 유사하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이며,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수단인 점, 과태료로서 부과될 금전의 한도액은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과징금은 의무위반상태하에서 영업수익의 예상치 내에서 결정된다는 점,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고,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3) 가산금 · 가산세 · 부당이득세

가산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일정한 금전부담을 말한다. 이것은 당해 행정청이 일정한 지급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부과하는 것인 점에서 가산금의 부과는 하명적 성질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6) 신봉기, 경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법조 1992.9., 76-77면.

가산세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이며, 조세법상 여러 가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벌이 과하여지는 경우라도 그러한 형벌의 규정이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그다지 실효성을 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가산세제도가 보다 효과적일 경우가 있다.

부당이득제도 일종의 조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세와 같이 국가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결정 등을 행한 통제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4) 부과금

일반적으로 과징금이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행 법제상 부과금 제도는 환경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5) 강제금

강제금이란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대집행 및 직접강제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적 상태 또는 사람의 외면적 상태를 변경하여 업무에 적합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그것을 의무자에게 수인시키는데 비하여, 강제금이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을 통해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집행벌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과징금과는 전혀 그 의미와 내용면에서 다르다.

6) 범칙금

범칙금제도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범칙금은 그 성질상 행정상의 제재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면서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 과징금의 유형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지금은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과징금, 행정제재적 과징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부과금액도 위반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⁷⁾

특히 일정한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법률마다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목적 및 성격 등에 착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⁸⁾⁹⁾

(1) 제1유형

제1유형은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이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1980년 12월에 과징금

7) 과징금은 현재 110여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영업대체 과징금은 94개 법률, 부당이득환수 과징금은 2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8) 이 구분체계는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29-40면 참조; 과징금을 유형화하는 견해를 보면, ① ㄱ. 원래의 과징금제(행정제재금), ㄴ. 변형과징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으로 구분하는 견해(김동희), ② ㄱ.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행정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과징금, ㄴ. 사업의 취소에 갈음하거나 사업의 취소와 선택관계에 놓이는 과징금으로 구분하는 견해(홍정선) 등이 있다.

9) 조성규,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2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19면에서는 과징금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를 통해 시사될 수 있는 점은, 과징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에 의한 일반적이고 고정된 법리적 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제도가 추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법 제6조에서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가격 인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이라 규정하였다. 제1유형의 과징금은 대체로 경제관련 법령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2) 제2유형

제2유형은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1981년 12월 개정당시 법 제31조에서 사업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제31조의2에서 위 제31조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이 유형의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이 있다.

(3) 제3유형

제3유형은 법령의 문언상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제도와 그 취지·목적 및 성격 면에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금은 명칭에 있어서 과징금과는 다르지만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격상 과징금과 유사하므로 이를 과징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과징금의 법적 성질

과징금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은 침해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원칙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통상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¹⁰⁾ 이 경우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된다.¹¹⁾

4. 형벌과의 관계

과징금부과처분을 형사처벌과 아울러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¹²⁾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¹³⁾

II.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일반 현황

1. 과징금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징금제도를 채택하였던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경제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10)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통상 재량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나, 과징금의 부과여부는 기속행위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 대판 2007.7.12. 2005두1728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11) 박근성, 행정법 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418면.

12) 이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을 반드시 사법에 의한 처벌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사법에 의한 처벌로서 행정형벌을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에 의한 처벌로서 과징금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견해도 있다(박정훈, “행정법과 법철학-현대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의의-”, 행정법연구 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16면).

13) 대판 2007.7.12. 2006두455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위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일 뿐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대판 2004.4.9. 2001두6197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24조의 2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역지라는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¹⁴⁾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과징금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유형이 더욱 일반화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87년말까지 22개 법률에서, 1992년까지는 37개 법률에서 과징금을 도입하였으나, 과징금은 현재 110여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영업대체 과징금은 94개 법률, 부당이득환수 과징금은 2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과징금제도의 도입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과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기존의 환경보전법에 대체입법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2개뿐이며, 그 외의 전형적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경쟁산업의 경쟁저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 등과 함께 규정하거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이 범죄로 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규정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행정목적에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등 금융업에서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제재금으로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변형된 과징금은 대체적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규정된 경우와 사업정지 등과 선택적으로 병렬규정된 경우(시정조치와 병렬규정된 경우 포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중에, 보통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으로 표현되는 공익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익요건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

항만법은 특이하게 예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시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14) 현재 2003.7.24.2001헌가2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행정목적에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다.

법률, 승강기안전에 관한 법률, 해운법은 허가취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1) 중복제재의 문제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를 병과할 경우 이중부담 내지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¹⁵⁾이 지적되어 왔다. 법령상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가 동시에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듯 종래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일부 법령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있다.¹⁶⁾

<과징금제도와 벌칙적용의 특례>

구 분	법 령
친고죄화	해운법 제65조제1항, 공정거래법 제71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 항공법 제181조
과징금부과시 과태료 미부과	삭도·케도법 제39조, 식품위생법 제8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항공법 제181조
벌금부과시 과징금 미부과	해운법 제65조2항

15) 현재결정 중에는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6) 조정찬, 과태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개선연구자료 4집, 법제연구총서, 1997. 12, 356면.

그러나,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를 병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 결정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제재의 정도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또는 이중부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소정의 과징금처럼 부당이득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벌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전히 이중처벌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수단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의 환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사업정지처분보다 경미하게 받아들여지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형된 과징금에 대한 이중처벌 내지 이중부담의 문제가 법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중복된 금전적 제재라는 인상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와 사법상의 제재를 모두 규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의 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형된 과징금의 유형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¹⁸⁾

17)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85, 2001헌바2(병합) :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대상자에게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중복적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

18) 이에 대한 내용은 박해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경쟁법연구 제8권, 2002.02, 236-237면 참조.

첫째, 최근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는 공익성이 덜한 사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한 획일적 행정규제의 탈피를 전면내세워 사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대방과의 마찰 등을 피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또는 의무이행이나 법의 실효성보다는 의무불이행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온정주의적인 생각에서 사업정지·사업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범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형벌이라는 입장에서 벌금과 병존하는 과징금은 이중제재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과징금의 확대는 과징금제도의 남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의 비일관성

과징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도입됨으로써 법 체계적인 비일관성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첫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의 변형된 과징금의 형태이지만,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영업자체가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선택적 부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실무를 고려할 때, 공익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징금이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제도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선택적 부과보다는 공익요건을 통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영업정지처분, 과징금과 허가취소처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 해운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이 그 예이다. 그러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므로 최종적 행정제재수단인 허가취소와 선택적으로 과징금이 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허가취소

와 사업정지처분을 정하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도록 한 경우에도, 공익요건을 규정한 경우와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제로 공익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예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등을 어떤 법령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어떤 법령에서는 부령에 위임하는 등 그 규정방법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등 15개 법률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부령으로 위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분리하여 위임하고 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이 정해지는 부령에서 과징금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도입사례의 확대경향

변형된 과징금은, 일반적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변형된 과징금은 공익성 있는 사업에 한하여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령상의 대상사업이 공익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과징금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도외시하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선 기관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업정지보다는 상대방과의 마찰이 적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과 사업정지처분 중 처분을 택일하도록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징금제도의 도입시에는 공익상 필요를 기준으로 도입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업정지처분보다 경미한 제재수단이라는 관념하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경우는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4) 과징금 부과금액의 문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법령별로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각 법령별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과징금의 부과금액과 한도액을 각각 정하고 있어 그러한 금액이 어떤 특별한 기준하에서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상호 유사한 사업간에도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따라 일당 과징금 기준액을 정하고, 영업정지일수를 곱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과징금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여 줄 뿐 아니라, 과징금이 영업정지 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이라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과징금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영업별 매출액 또는 영업규모를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¹⁹⁾²⁰⁾²¹⁾²²⁾

<표> 과징금의 한도액

한도액	해당법률명
50억원이하	항공법
10억원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19) 대판 2001.2.9. 2000두6206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0) 대판 2002.5.28. 2000두6121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1) 대판 2001.3.9. 99두5207 :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2) 대판 1992.9.12. 91누13700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한 도 액	해 당 법 률 명
5억원이하	공인회계사법(회계사는 1억원이하)
3억원이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억원이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1억원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폐기물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방송법, 식품위생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도매인은 1천만원이하), 유통산업발전법
5천만원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자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먹는물관리법, 약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화장품법
3천만원이하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대외무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전과법, 해운법, 도시가스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천만원이하	관광진흥법, 도시철도법, 비료관리법, 전자서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의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산업법
1천만원이하	사료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석탄산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법
500만원이하	항만운송사업법
300만원이하	주차장법
200만원이하	궤도운송법, 항만법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I. 수산업분야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1.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입법연혁

(1) 1996년 과징금 부과제도의 신설

당시 수산업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됨에 따라 마을 어업등의 어장수심의 한계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어업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1996. 12. 31>

어업별 과징금의 기준(제72조의2제1항관련)

구 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근해트롤(대형트롤) ○근해선망(대형선망)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 어업정지 1일: 15만원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서남해구) ○근해트롤(동해구트롤) ○근해안강망	○ 어업정지 1일: 10만원
	○기타 근해어업	○ 어업정지 1일: 5만원
연안어업	○전 연안어업	○ 어업정지 1일: 3만원
구획어업	○정치성, 이동성 구획어업	○ 어업정지 1일: 3만원
신고어업	○전 신고어업	○ 어업정지 1일: 1만원

<자 료>

[별표 4] 과징금 산정기준(제72조의2 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단위 : 원 / 어선톤당)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대형기선 저인망	중형기선 저인망	근해 트롤	근해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 선인망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봉수망	잠수기	근해 통발	근해 형망	근해 연승
1. 어업허가장에 명시된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2조 법 제45조 제1항	700	1,800	700	700	500	1,800	700	700	200	13,000	600	1,500	100
2. 행정처분 기간중 무단으로 계류 장소에서 이탈한 때	법 제34조 법 제45조 제1항	1,500	3,500	1,500	1,600	700	3,500	1,000	1,000	400	2,500	800	2,000	200
3.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정부간 합의사항을 위반한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34조 법 제45조 제1항	1,100	2,700	1,100	1,200	600	-	800	800	200	-	700	-	100
4.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거나 관련국 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	법 제34조 법 제45조 제1항	800	1,800	800	800	500	-	700	700	200	-	600	-	100
5. 한·일 어업협정합의 의사록 8항(a)의 규정에 의한 수역(한국정부가 설치하고 있는 어업금지 수역을 제외한다) 또는 한·일 양국 어선의 자율규제에 관한 정부간	법 제34조 법 제45조 제1항	800	1,800	800	800	500	-	700	700	200	-	600	-	10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대형기선 저인망	중형기선 저인망	근해 트롤	근해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 선인망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봉수망	잠수기	근해 통발	근해 형망	근해 연승
합의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거나 무단침범한 때(제14호 바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획물을 운반한 때	법 제46조	300	1,500	300	300	200	1,000	400	400	100	9,000	250	1,000	100
7. 어장·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법 제59조	800	1,800	800	800	500	2,000	700	700	200	15,000	600	1,700	200
8.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62조	1,100	2,700	1,100	1,200	600	2,700	800	800	200	15,000	600	1,700	100
9. 어업감독공무원의 범칙어획물에 대한 방류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76조	300	1,500	300	300	100	700	200	200	100	5,000	150	500	100
10. 자원의 조사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법 제77조	300	1,500	300	300	-	700	-	200	-	-	-	-	-
11.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의2	300	1,500	300	300	100	700	200	200	100	5,000	150	500	100
12. 행정관청이 수산시책상 필요하여 조치한 사항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법 제60조 제2항	300	1,500	300	300	100	700	200	200	100	5,000	150	500	100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대형기선 저인망	중형기선 저인망	근해 트롤	근해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 선인망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봉수망	잠수기	근해 통발	근해 형망	근해 연승	
13.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2조	800	1,800	800	800	500	1,100	700	700	200	15,000	600	1,700	100	
14.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2조														
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1,100	2,700	1,100	1,200	600	2,000	800	800	200	1,500	700	1,700	-	
나. 포획·채취금지구역, 금지기간, 금지체장에 위반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500	1,600	500	500	300	1,600	500	500	150	11,000	400	1,300	80	
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사용한 때	법 제79조	1,100	2,700	1,100	1,200	600	2,000	800	800	200	15,000	700	1,700	200	
라. 어획물을 그 어선으로부터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실거나 옮겨 받은 때		500	1,600	500	500	300	1,600	500	500	150	11,000	400	1,300	80	
마. 어획물의 양륙지역 및 매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500	1,600	500	500	300	1,600	500	500	150	11,000	400	1,300	80	
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때		200	1,300	200	200	80	-	200	200	80	-	150	-	8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대형기선 저인망	중형기선 저인망	근해 트롤	근해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 선인망	근해 자망	근해 안강망	근해 봉수망	잠수기	근해 통발	근해 형망	근해 연승
15.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가. 어업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1,100	2,700	1,100	1,200	-	2,700	800	800	-	-	-	1,700	-
나. 어구의 사용금지구역과 기간, 어망목의 제한 및 어구규모의 제한에 위반한 때		1,100	2,700	1,100	1,200	-	2,700	800	800	-	-	700	1,700	-
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물의 제한에 위반한 때		500	1,600	500	500	300	1,600	500	500	150	11,000	400	1,300	80
라. 어선·어구규모 및 사용톤수를 위반하거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적재 또는 이러한 어구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조 또는 시설을 한 때		1,100	2,700	1,100	1,200	600	2,700	800	800	200	20,000	700	1,700	100
16. 허가받은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에 위반한 때	법 제41조 제4항	-	2,700	-	-	-	2,700	-	-	-	-	-	-	-
17. 허가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허가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44조의2 제1항	500	1,600	500	500	300	1,600	500	500	120	11,000	400	1,300	80
18. 어업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운반한 범칙어획물을 소지·운반·교환·양도양수·반출·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위탁 또는 수확한 때	법 제75조	1,100	2,700	1,100	1,200	600	2,700	800	800	200	20,000	700	1,700	100

[비 고]

1. 근해어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과징금 부과금액 = 근해어업별 어선톤당 기준가격 * 허가 받은 어선의 톤수 * 어업정지기간

나. “가”목의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허가받은 어선이 2척이상인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직접 포획하는 어선 중 가장 큰 어선의 톤수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까지만 적용한다.

2. 연안어업

(단위 : 원 / 어선톤당)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연안 자망	연안 안강망	연안 형망	연안 선망	연안 연승	연안 채낚기	분기 초망	연안 조망	연안 통망	손꽂치
1. 어업허가장에 명시된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법 제45조 제1항	500	1,500	5,000	500	200	400	400	800	500	-
2. 행정처분 기간중 무단으로 계류장소에서 이탈한 때	법 제34조 법 제45조 제1항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3.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획물을 운반한 때	법 제46조	600	1,700	6,000	600	250	450	450	900	600	-
4. 어장·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표시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법 제59조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I. 수산업분야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연안 자망	연안 안강망	연안 형망	연안 선망	연안 연승	연안 채낚기	분기 초망	연안 조망	연안 통망	손꽂치
5.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제9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62조	650	1,800	6,500	650	350	450	450	9,500	650	-
6. 어업감독공무원의 범칙어획물에[대한 방류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76조	400	1,200	3,500	400	150	450	450	600	400	-
7.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사상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 의2	400	1,200	3,500	400	150	450	450	600	400	-
8. 행정관청이 수산시책상 필요하여 조치한 사항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법 제60조 제2항	400	1,200	3,500	400	150	450	450	600	400	-
9.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2조	700	2,000	7,000	700	400	500	500	1,000	700	-
10.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2조										
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600	1,700	6,000	600	250	450	450	900	600	-
나. 포획·채취금지구역, 금지기간, 금지체장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한 때		400	1,500	4,000	400	200	350	350	700	400	-
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사용한 때		600	1,700	6,000	600	250	450	450	900	600	-
라. 어획물을 그 어선으로부터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거나 옮겨 받은 때		500	1,600	5,000	500	200	400	400	800	500	-
마. 어획물의 양륙지역 및 매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500	1,600	5,000	500	200	400	400	800	500	-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어업별									
		연안 자망	연안 안강망	연안 형망	연안 선망	연안 연승	연안 채낚기	분기 초망	연안 조망	연안 통망	손꽂치
11.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79조										
가. 어업금지 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때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나. 어구의 사용금지 구역과 기간, 어망목의 제한 및 어구규모의 제한에 위반한 때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물의 제한에 위반한 때		400	1,500	4,000	400	200	350	350	700	400	-
라. 어선·어구규모 및 사용통수를 위반하거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 적재 또는 이러한 어구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조 또는 시설을 한 때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12.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범칙어획물을 소지, 운반, 교환, 양도, 양수, 반출,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위탁 또는 수탁한 때	법 제75조	700	2,000	7,000	700	300	500	500	1,000	700	-

[비 고]

1. 연안어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과징금 부과금액 = 연안어업별 어선톤당 기준가격 *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 * 영업정지기간

나. “가”목의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허가받은 어선이 2척이상인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포획하는 어선 중 가장 큰 어선의 톤수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까지만 적용한다.

※ 구획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3. 수산물가공업

가. 일반기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은 처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3개월)·월별(30일 기준)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나. 등급별 과징금 기준

등 급	년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	100이하	40,000
2	100초과 ~ 300이하	50,000
3	300초과 ~ 500이하	60,000
4	500초과 ~ 700이하	70,000
5	700초과 ~ 1,000이하	80,000
6	1,000초과 ~ 1,300이하	90,000
7	1,300초과 ~ 1,600이하	100,000
8	1,600초과 ~ 2,400이하	110,000
9	2,400초과 ~ 2,800이하	120,000
10	2,800초과 ~ 3,200이하	130,000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등 급	년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1	3,200초과 ~ 3,800이하	150,000
12	3,800초과 ~ 4,400이하	170,000
13	4,400초과 ~ 6,000이하	190,000
14	6,000초과 ~ 8,000이하	210,000
15	8,000초과 ~ 10,000이하	230,000
16	1,000초과 ~ 13,000이하	250,000
17	10,000초과 ~ 15,000이하	270,000
18	15,000초과 ~ 20,000이하	290,000
19	20,000초과 ~ 30,000이하	310,000
20	30,000초과	330,000

(2) 2003년 과징금 부과제도의 개정

어획물운반업자(漁獲物運搬業者)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해어업 등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이 초래하는 어획물운반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였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근해트롤(대형트롤) ○근해선망(대형선망)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 어업정지 1일: 19만원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서남해구) ○근해트롤(동해구트롤) ○근해안강망	○ 어업정지 1일: 13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 어업정지 1일: 6만원
연안어업	○전 연안어업	○ 어업정지 1일: 4만원
구획어업	○정치성, 이동성 구획어업	○ 어업정지 1일: 4만원
신고어업	○전 신고어업	○ 어업정지 1일: 1만원
어획물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13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9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6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3만원

2003년 당시 행정관청은 면허·허가·신고·어획물운반업 등에 제한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수산업법 91조의2).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했다. 단, 양식물, 신고어업 어획물, 원양어업 어획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제외했다.²³⁾

□ 행정처분 기준비교(과징금 부과 가능부분, 2003년)

위 반 행 위	정지처분 기준	어업허가 처분기준
○ 외국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을때	60~90일	좌동
○ 어획물운반선으로 어업을 한때	60~90일	90일~취소
○ 관세법위반으로 통보시	40~60일	좌동
○ 범칙어획물을 운반한때	30~60일	
○ 의뢰할 수 없는 어획물을 운반한때	30~60일	
○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때	20~40일	20~40일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0~40일	10~60일

당시 논의 자료를 보면,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신고어업과 어획물운반업은 행정처분에 따른 어업정지 이에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하위규정인 수산업법시행령에서 어획물운반업은 과징금 기준이 없어 정지처분을 하므로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²⁴⁾

어획물운반선은 수산업법시행령상 220톤미만(구톤수 300톤)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톤급별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 정지처분 기간이 어업과 유사하므로 어업에 준하여 설정(1안)
- 감척사업시 용역으로 평가된 손실액을 기준으로 설정(2안)

23) ○ 운반업 등록현황(2002.6월말 기준)

	계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64	20	35	27	5	20	1	56
10톤이하	7			4	1	1		1
10~50톤	88	3	14	19	3	12		37
51~70톤	37	1	15	4	1	4		12
71~200톤	30	14	6			3	1	6
201~250톤	2	2						

24) 행정심판(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01-7077)에 대한 재결시 어획물운반업에도 과징금제도검토 권고.

- 제1안과 제2안으로 산출할 경우, 어선어업보다는 영세한 운반업에 과중한 부담 및 어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업의 2/3 수준으로 조정(3안)

(단위 : 만원 / 1일당)

어획물운반선 규모	1안	2안	3안	어업의 과징금
10톤미만	3	1.4	2	3
10톤이상~50톤미만	5	6.8	4	5
50톤이상~70톤미만	10	16.3	7	10
70톤이상	15	39.4	10	15

[톤급별 산출근거]

- 10톤미만 : 연안어업 수준의 어선규모
- 10톤이상 ~ 50톤미만 : 근해어업중 기타어업에 준하는 어선
- 50톤이상 ~ 70톤미만 : 근해어업중 중형어업에 준하는 어선
- 70톤이상 : 근해어업중 대형어업에 준하는 어선

[제2안 산출근거]

- 감척 운반선 척수(1999~2001) : 44척
- 총톤수 : 3,575톤
- 손실액 : 4,380,689천원(3년간/년간 150일 운영 가정)
- 톤당 1일 손실액 : 4,380,689천원 ÷ 3,575톤 ÷ 3년 ÷ 150일 = 2.72천원

위와 같이 검토함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감척사업 손실액을 기준함이 합리적이나 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3안으로 입법 예고후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 즉, 과징금 부과기준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업종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운반업의 수익성이 어업보다는 낮은 점을 감안하여 어업의 과징금 기준의 2/3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불법어업 처벌기준 강화...불법조업 조기근절
20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하기 위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시기 종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면허어업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허가어업은 1차위반(30일), 2차위반(45일), 3차위반(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위해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일수를 3배로 늘렸다.

또한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1차위반(30일), 2차(45일), 3차(60일)의 어업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불법공조 조업을 한 경우에 어업정지 일수를 늘리고 3번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유해약품 등으로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에 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참고자료 >

□ 주요내용

- 청문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관계 어업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 어장의 적정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어업시기 종료시 일정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신설(안 제5조 별표. II. 1. 가. 제19호 및 별표. II. 2. 가. 제20호).
 - 면허어업 : 1차(경고), 2차(경고), 3차(취소)
 - 허가어업 :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안 제5조 별표. II. 1. 나. 제1호).
 - 1차(경고), 2차(경고), 3차(취소) → 1차(취소)
 -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안 제5조 별표. II. 2. 라. 제21호)
 - 1차(10일), 2차(15일), 3차(20일) →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정지처분의 합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5조 별표. I. 제5호).
 -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안 제5조 별표. II. 2. 라. 제9호).
 -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해기사 포함>
 -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안 제5조 별표. II. 2. 라. 제17호).

- 1차(30일), 2차(45일), 3차(60일) → 1차(60일), 2차(90일), 3차(취소)<해기사 포함>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유해약품 등으로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안 제5조 별표. II. 2. 가. 제24호).
- 1차(90일), 2차(취소)
-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강화(안 제5조 별표. II. 2. 라. 18호).
- 1차(10일), 2차(15일), 3차(20일) → 1차(20일), 2차(30일), 3차(40일)

2.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1) 과징금 부과 대상

수산업법 제9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째, 어업권자가 동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둘째,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9조 준용 포함)

셋째,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넷째,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다섯째,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p>제91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 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 <p>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p> <p>제82조(과징금의 용도) 생략</p>

(2) 과징금 부과대상의 예외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

(3) 과징금의 부과 금액·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 어업정지 1일: 19만원

구 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안강망어업	○ 어업정지 1일: 13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 어업정지 1일: 6만원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 어업정지 1일: 4만원
구획어업	○모든 구획어업	○ 어업정지 1일: 4만원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 어업정지 1일: 1만원
어획물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13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9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6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3만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따라 일당 과징금 기준액을 정하고, 사업정지일수를 곱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과징금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여 줄 뿐 아니라, 과징금이 영업정지 정지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이라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과징금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수납

행정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는 수납기관(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며,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5) 과징금의 용도

수산업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은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3. 주요 규정내용과 고려점

(1)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동법 제91조 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과징금의 입법목적에 따른 고려하에서의 소위 영업정지를 대체 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생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의 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정지내지 자격·면허·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법익보다 이와 같은 처분의 효과로 인한 제3자내지 공익에 대한 법익의 침익이 보다 클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 따라 의무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동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와 같은 성격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것이다. 더욱이 동법의 경우 다른 대부분의 입법례에서와 같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구체적 사유가 생략(비록 부과사유인 제34조의 제명등에서 공익의 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징금처분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제도의 도입목적이 공익적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다른 법률에서도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업정지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과징금부과사유가 규정여부에 관계 없이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에게는 법률에 단순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마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되어 양 처분 중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상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서 과징금부과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은 항시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로서 다른 입법례와 달리 “ . . .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 ” 라고 하여 제한에 관한 내용까지를 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산업법상 고유한 사유가 있다고 고려되어진다.

【유사입법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9 조의2 (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과징금 부과금액

동법 제91조에서는 과징금부과금액의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징금 부과금액의 실효성”이라 할 것이다.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는 행정처분기준의 합리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개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개선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제재 받는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 법령(35건)등 이었다.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 법령】

부처명	법령명	비고
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1995. 5. 1.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1996. 12. 5. 전부개정으로 [별표 3] 제정 후 1999. 6. 30.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97. 12. 31. [별표 5]로 제정 후 2003. 11. 4. 일부개정되면서 소폭 증가하다 현재까지 변화 없음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부처명	법령명	비 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1998. 6. 20. [별표 3]으로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교육 과학 기술부	원자력법 시행령 제32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999. 5. 24. [별표 3]으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화 거의 없음.
국토 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기준등)	1997. 7. 10.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1996. 7. 19. 일부개정으로 [별표 3] 제정 후 현재까지 금액 변화 없음
	삭도·궤도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99. 7. 29.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거의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1987. 7. 1. [별표 1]로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화 없음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84. 6. 2. [별표]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별표 2]로 거의 변화 없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보건 복지 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약사법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1992. 6. 2. 전부개정으로 [별표]로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부처명	법령명	비 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994. 12. 31. [별표 2]에서 2003. 1. 7.[별표 1]로 전부개정되면서 변화있다가 현재까지는 변화 없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식품 의약품 안전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금융 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1997. 12. 31. [별표]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없음.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5(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지식 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7조(과징금 부과 등)	1999. 6. 30. [별표 2]로 수정된 후 현재까지 금액 변화 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987. 1. 31. [별표 1] 제정, 1999. 9. 9. [별표 1의2]로 일부개정 후 현재까지 금액변화 거의 없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1997. 8. 7. [별표 3의2]로 제정 후 개정을 거치며 현재 [별표 3]에 이르기까지 금액 변화 거의 없음.
	전기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1999. 7. 16. [별표 1]로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부처명	법령명	비 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1999. 7. 18. [별표 2의3]으로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별표 2]로 거의 변화 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999. 9. 3. [별표 3의2]로 일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출액 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과징금부과에 대한 개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 국민의 이해도제고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시 된다고 할 것이다.

(3) 과징금 부과제외사유, 감면규정 및 면허의 조건 등의 고려

동법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항에서는 과징금부과 제외사유를 제1호에서 제7호에 걸쳐 나열하고 있으며, 감경의 사유로서,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 등 두 가지의 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형식상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은 타당하나, 특히 감경의 사유에 있어 현재의 규정내용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사유로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라 할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다른 금전적 제재수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횡수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보다 구체적인 감경사유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과징금 부과사유인 동법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1항 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제1항에서는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규정사항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상위 법령의 형태로 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고려된다.

(4) 동일 의무위반행위 시 과징금과 다른 제재수단과의 병과

과징금이라고 하는 금전적 제재수단과 다른 기타 금전적 제재수단과의 병과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내지 판례의 경향은 그 위헌성을 부정함에 일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관료주의의 철폐 등을 요건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정책에 따라 종래의 행정청 중심적 행정운동을 위한 입법화가 아닌 행정 당사자로서의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입법화, 즉 국민중심의 입법화가 강하게 요구되어 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국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내지 중첩적인 제재수단을 규정하여 금전적 손실을 더하게 끄 한다는 것은 문제시 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정비함이 타당할 것이다.

1) 과징금- 과태료의 병과

동법 제91조에서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8조, 제72조 제1항 등의 의무위반사유에 있어 동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유와 병과 되고 있다.

2) 과징금- 벌금의 병과

동법 제91조에서 과징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 제3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7조(벌칙)제 1항 제3호 규정과 병과되고

있으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부과사유 가운데 제32조 제1항의 경우, 제98조(벌칙) 제5호 규정과 병과되고 있으며(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부과사유인 제72조 제1항은 제99조(벌칙) 제5호 규정과 병과(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되고 있다.

II.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기준의 문제점

1. 어업소득과의 괴리

수산업법상 과징금이 영업정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체적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해당 정지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소득수준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업을 통한 소득수준과 과징금의 금액차이가 클 경우 불법어업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보다 불법어업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어업인은 불법어업의 단속이 되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정지기간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제재수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대규모 상업적 어업인 근해어업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는,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으로 인한 소득과 과징금의 차이가 크며, 고정자산적 성격 및 감가상각 등이 높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근해어업의 과징금은 수산업법시행령 별표5에 따라 어업정지 1일당 6만원~19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해어업의 1일당 평균 어업소득은 2010년 기준 약 64만원으로 현재 측정되어 있는 과징금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장관허가어업 1일당 어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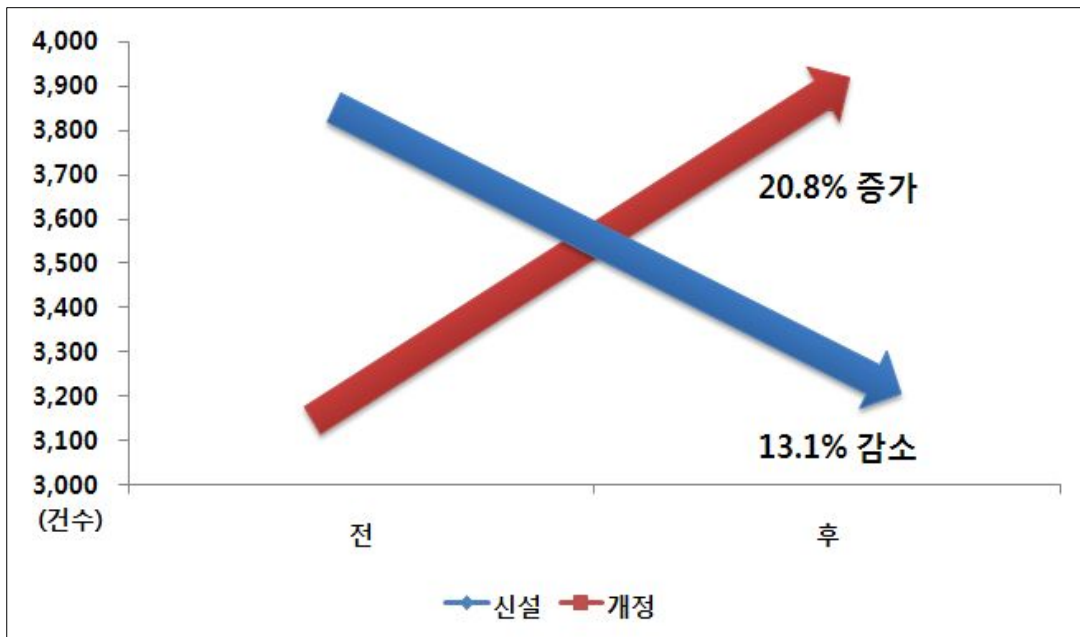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신 설 (1996년)	개 정 (2003년)	현 재 (2010년)
어업소득	57,238	62,306	120,904
출어일수	209	187	190
1일당 어업소득	273.9	333.2	636.3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 년도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의 과징금부과액의 수준은 현실적 어업소득에 비하여 낮으므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 어업소득에 부합하는 규모의 과징금부과액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과징금제도 신설·개정 전후 불법어업 변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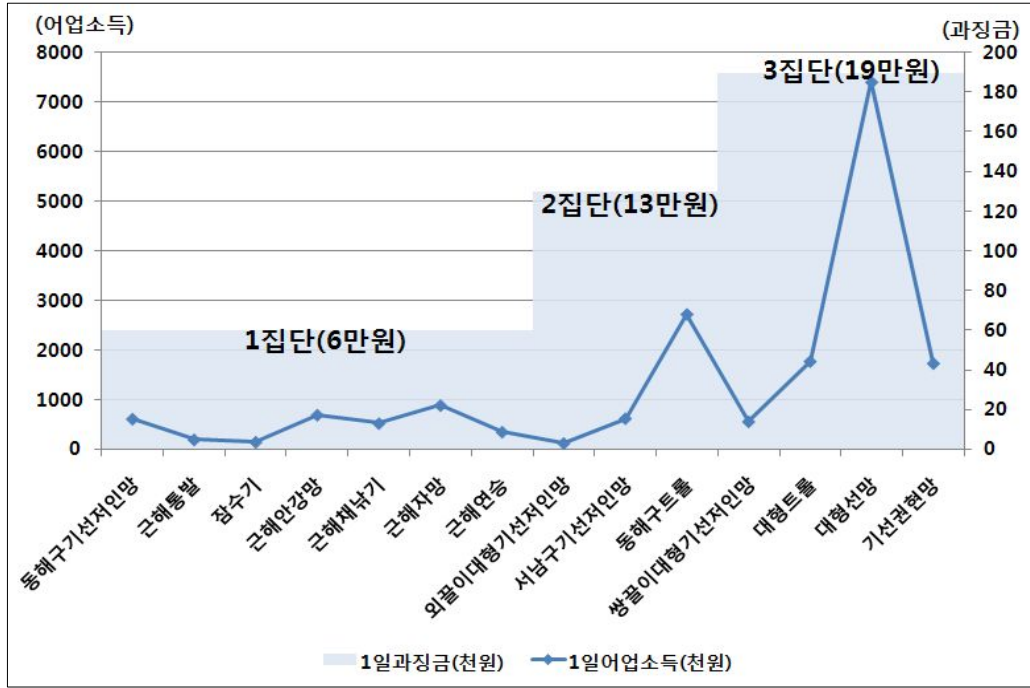
2. 업종별·규모별 차별적 적용 미흡

현재 수산업법상 과징금은 근해어업은 3개 집단으로 연안 및 구획어업은 단일 집단, 어획물 운반업은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과징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의 특성 상 업종별 어업소득이 큰 차이를 가지며, 동일업종에 있어서도 어선의 규모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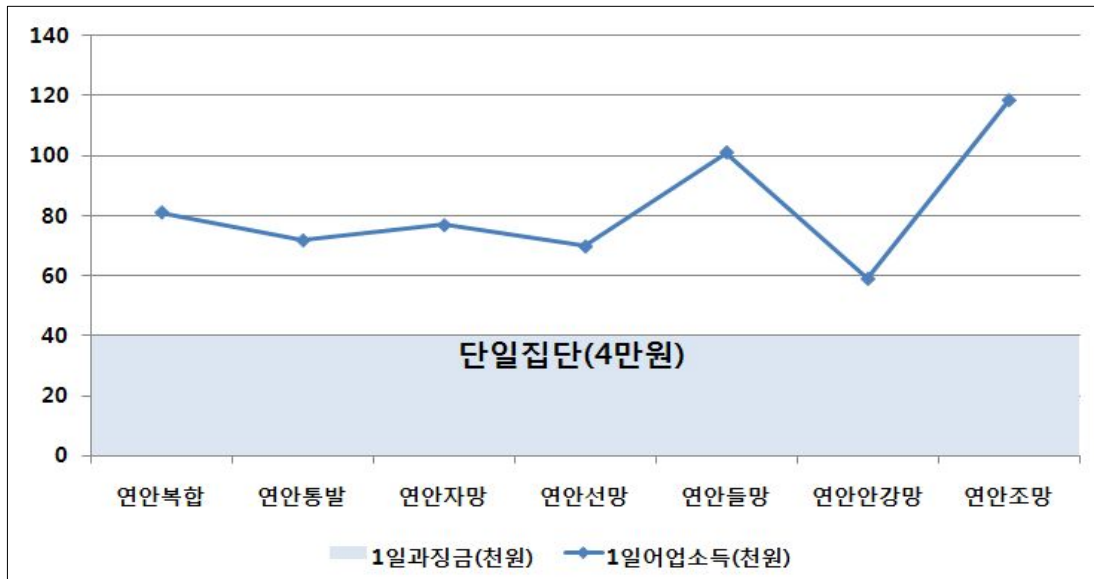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근해어업 업종별로 1일당 어업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114.6천원)과 대형선망(7407천원)은 약 64배 이상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근해어업 1일당 어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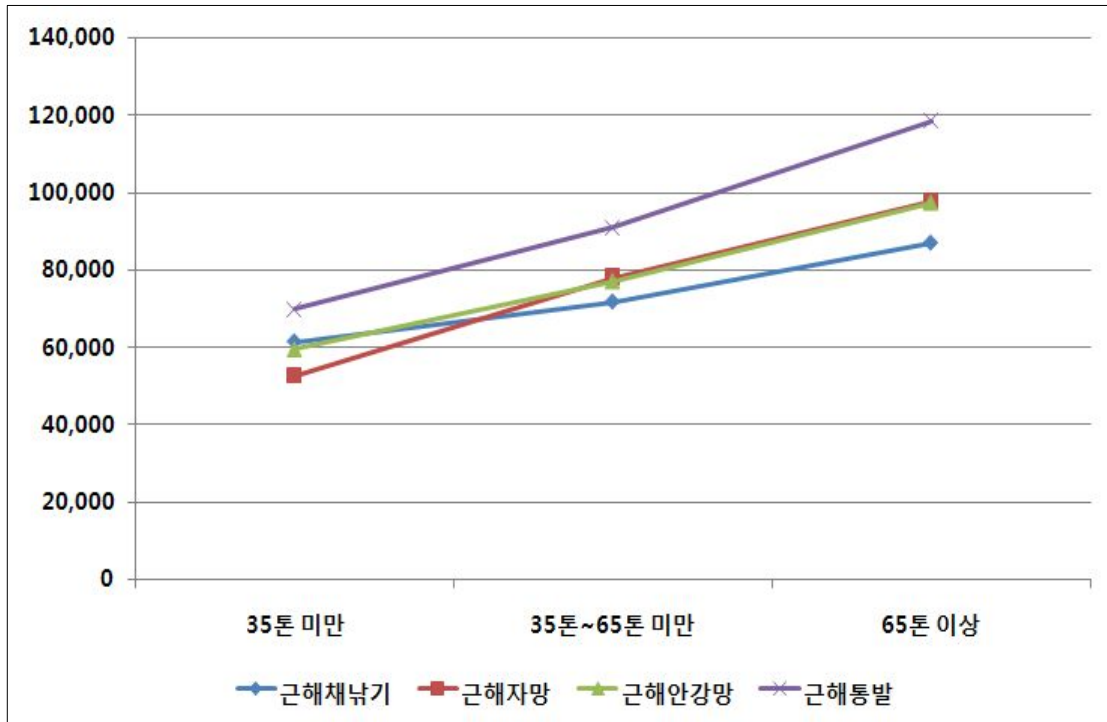
연안어업의 경우 1일 어업소득의 차이는 약 2배 정도로 분석되어 근해어업에 비해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연안어업 1일당 어업소득



어업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근해어업의 경우 동일한 기준의 규모를 잡기에는 어려우나 동일 규모의 어선이 분포가 되어있는 4개업종을 비교한 결과 규모가 클수록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림> 근해어업 규모별 어업소득 변화



연안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어선이 1톤에서 10톤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규모별 어업소득의 증가추세가 나타나며 어선규모 증대에 따른 어업소득 증가정도를 추정하면 아래식과 같이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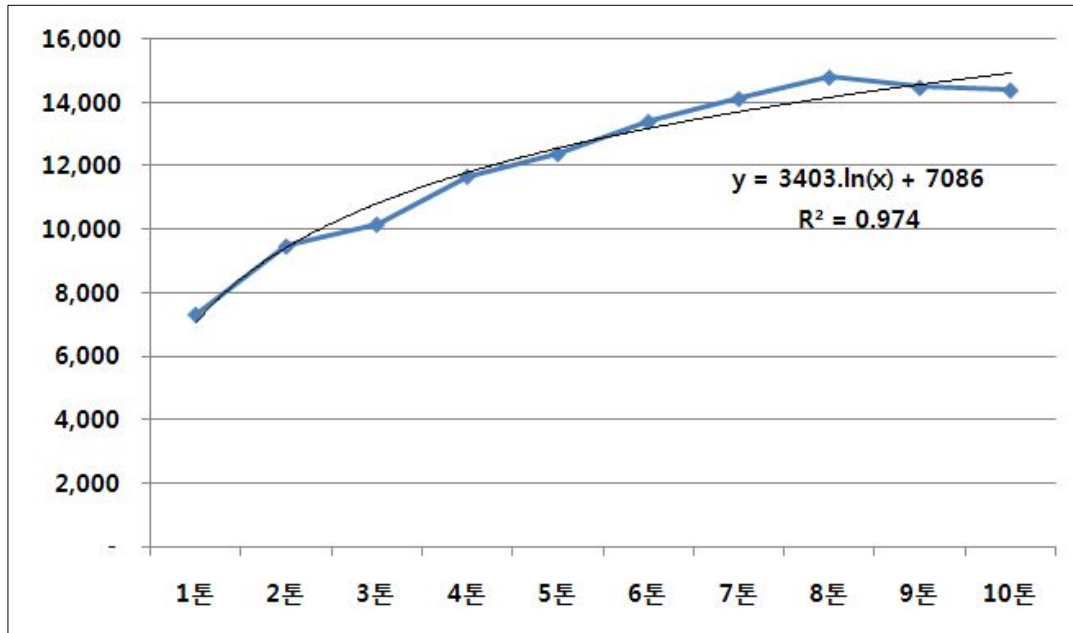
$$Y = 3,403 \log X + 7,086$$

Y : 3년평균어업소득

X : 어선규모(톤)

즉, 어선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어업소득이 증가하며, 약 6톤 이상에서는 안정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연안어업 규모별 어업소득 변화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의 과징금부과액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집단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안복합어업에서 1톤의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과 10톤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의 1일당 어업소득은 각 4만4천원과 9만7천원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동일한 기준의 과징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별 차별적 과징금 적용이 필요하다.

3.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미흡

수산업법상 과징금제도가 신설된 1996년과 현재의 과징금부과액은 약 1.2~1.33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징금부과금액의 상한액은 2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을 하위법령 규정하고 있다.

부과금은 제정 후 2003. 11. 4. 일부개정되면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이 고정적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표> 수산업법상 과징금 변화(수산업법시행령 별표 5)

	업종별	신설(1996) (어업정지 1일)	개정(2003) (어업정지 1일)
근해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15만원	19만원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안강망어업	10만원	13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5만원	6만원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3만원	4만원
구획어업	모든 구획어업	3만원	4만원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1만원	1만원
어획물 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	13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9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6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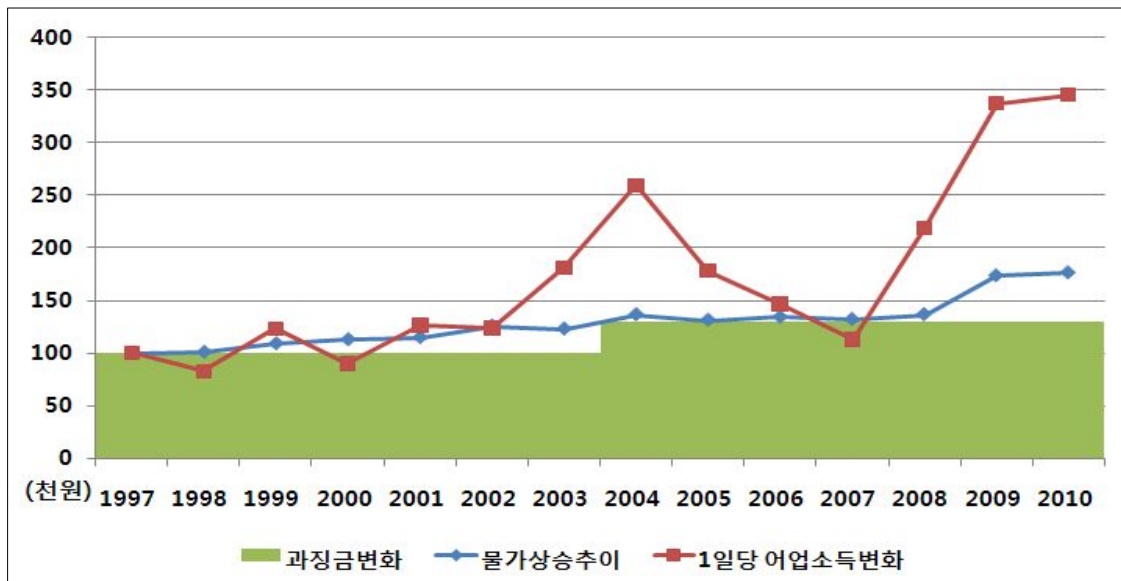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는 행정처분기준의 합리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개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개선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제재 받는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상응하지 않는 법령(35건)등 이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시간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이라는 기회비용을 가지므로 그 시간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1997년도의 15만원과 2010년도의 15만원은 체감가치가 틀리다. 수산부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1997년의 15만원의 가치는 2010년의 약 26.5만원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물가상승률과 과징금의 변화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액이 고정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타 제재수단과 중복성

과징금이라고 하는 금전적 제재수단과 다른 기타 금전적 제재수단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어업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금전적 손실을 더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현재 수산업법 과징금 부과사유 중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8조, 제72조 제1항 등의 의무위반사유에 있어 동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유와 중복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적 금전적 제재수단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 분석의 대상

(1) 근해/연안/구획

2010년말 기준 연근해어업의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근해어업 3,276건(4.5%), 연안어업 58,091건(81.5%), 구획어업 6,540건(9.3%)으로 나타났다.

<표> 허가현황('10)

비 고	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포함)
허가건수	67,907건 (100%)	3,276건 (4.8%)	64,631건 (95.2%)
허가정수	57,692건 (100%)	2,732건 (4.7%)	54,960건 (95.3%)
어선척수 (백분율)	54,874척 (100%)	2,949척 (5.4%)	51,925척 (94.6%)

자료 : 농림수산물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

어업허가는 수산자원의 상태,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 허가정수를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각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근해어업의 허가 건수와 허가 정수 비교현황

종류 (명칭)	허가건수 (어선척수)	허가정수	'10년 생산량 (생산금액)
계	3,276 (2,949)	2,732	784,160톤 (2,202,939백만원)
○ 대형저인망어업	81 (112)	72	64,327톤(8.2%) (178,613백만원(8.1%))
- 외끌이대형저인망	47(47)	34	12,853톤(51,931백만원)
- 쌍끌이대형저인망	34(65)	38	51,474톤(126,682백만원)
○ 중형저인망어업	90 (99)	56	40,844톤(5.2%) (115,899백만원(5.3%))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종류 (명칭)	허가건수 (어선척수)	허가정수	'10년 생산량 (생산금액)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39(39)	20	5,834톤(22,155백만원)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42(42)	29	15,800톤(64,665백만원)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9(18)	7	19,210톤(29,079백만원)
○ 근해트롤어업	91 (91)	60	99,620톤(12.7%) (303,068백만원(13.8%))
- 대형트롤	52(52)	37	60,933톤(187,657백만원)
- 동해구트롤	39(39)	23	38,687톤(115,411백만원)
○ 근해선망어업	72 (222)	64	184,024톤(23.5%) (327,230백만원(14.9%))
- 대형선망	25(144)	29	160,409톤(296,153백만원)
- 소형선망	47(78)	35	23,615톤(31,077백만원)
○ 근해채낚기어업	699 (500)	618	46,147톤(5.9%) (214,744백만원(9.7%))
○ 기선권현망어업	77 (399)	68	157,720톤(20.1%) (234,434백만원(10.6%))
○ 근해자망어업	707 (401)	569	59,544톤(7.6%) (319,686백만원(14.5%))
○ 근해안강망어업	238 (230)	199	56,834톤(7.2%) (156,951백만원(7.1%))
○ 근해봉수망어업	45 (10)	61	-
- 근해봉수망	40(10)	55	
- 근해자리돔들망	5(0)	6	
○ 잠수기어업	236 (236)	175	9,858톤(1.3%) (48,149백만원(2.2%))
- 제1구	7(7)	6	
- 제2구	11(11)	9	
- 제3구	129(129)	93	
- 제4구	52(52)	39	
- 제5구	37(37)	28	
○ 근해통발어업	310 (226)	239	39,780톤(5.1%) (113,263백만원(5.1%))
- 근해장어통발	63(62)	40	7,693톤(56,789백만원)
- 근해통발	214(142)	159	32,087톤(56,474백만원)
- 근해문어단지	33(22)	40	
○ 근해형망어업	94 (91)	72	10,236톤(1.3%) (20,477백만원(0.9%))
- 패류형망어업 제1구	61(58)	55	
- 패류형망어업 제2구	33(33)	17	
○ 근해연승어업	536 (332)	479	15,226톤(1.9%) (170,424백만원(7.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2010년 기준)

<표> 연안어업의 허가건수와 허가정수 비교

종류(명칭)	허가건수 (어선척수)	허가정수	'10년 생산량 (생산금액)
계	58,091(45,812)	52,613	200,885톤(12,589억원)
연안안강망	561(510)	631	21,671톤(970억원)
연안선망	245(291)	331	24,815톤(400억원)
연안통발	7,640(6,301)	4,680	33,987톤(2,869억원)
연안조망	846(310)	1,143	1,134톤(73억원)
연안선인망	7(1)	14	-
연안자망	18,274(13,674)	17,351	71,940톤(4,217억원)
연안들망	816(152)	781	7,970톤(244억원)
연안복합	29,700(24,571)	27,682	39,368톤(3,816억원)
연안형망(무동력)	2(2)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2010년 기준)

(2) 신고어업

신고어업의 종류에는 맨손, 나잠, 투망 등 3종류가 있으며, 신고어업은 2010년 기준 총 127,320건으로 이중 맨손어업이 120,200건으로 약 94.4% 점유하고 있다.

<표> 신고어업의 건수 비교

구 분	계	맨손	나잠	투망
건수(건)	127,320	120,200	6,952	168
비율(%)	100.0	94.4	5.5	0.1

2. 과징금 부과 기초자료 분석

(1) 연근해 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 인식도 조사(국립 수산과학원 2010년) 자료 검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연근해어업의 어업수익 및 비용, 어업이익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였던 ‘연근해 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 인식도 조사(2010)’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1) 근해어업²⁵⁾

(단위:천원)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전체	대규모	1,751,517	1,090,654	660,863
	중규모	1,504,000	959,474	544,526
	소규모	1,082,255	783,370	298,885
	평균	1,445,924	944,499	501,425
근해채낚기	대규모	382,000	269,000	113,000
	중규모	280,000	193,000	87,000
	소규모	127,000	105,000	22,000
	평균	263,000	189,000	74,000
근해자망	대규모	450,000	320,000	130,000
	중규모	300,000	202,000	98,000
	소규모	130,000	177,400	-47,400
	평균	293,333	233,133	60,200
근해통발	대규모	1,000,000	561,400	438,600
	중규모	760,000	444,000	316,000
	소규모	130,000	127,000	3,000
	평균	630,000	377,467	252,533
근해연승	대규모	475,000	393,800	81,200
	중규모	300,000	217,000	83,000
	소규모	650,000	500,000	150,000
	평균	475,000	370,267	104,733
서남해구의끝이 중형저인망	대규모	969,829	665,224	304,605
	중규모	1,239,000	660,000	579,000
	소규모	898,000	557,000	341,000
	평균	1,035,610	627,408	408,202

25)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 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 인식도 조사’. 2010, 6-7면.

Ⅲ.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근해안강망	대규모	1,500,000	1,170,000	330,000
	중규모	450,000	380,000	70,000
	소규모	500,000	336,000	164,000
	평균	816,667	628,667	188,000
동해구의끝이 중형저인망	대규모	489,000	287,000	202,000
	중규모	438,000	243,000	195,000
	소규모	298,000	222,000	76,000
	평균	408,333	250,667	157,666
동해구중형트롤	대규모	1,062,000	641,000	421,000
	중규모	780,000	520,000	260,000
	소규모	670,000	448,000	222,000
	평균	837,333	536,333	301,000
외끝이대형저인망	대규모	1,300,000	950,000	350,000
	중규모	676,000	457,000	219,000
	소규모	900,000	790,000	110,000
	평균	958,667	732,333	226,334
쌍끝이대형저인망	대규모	3,525,000	2,534,000	991,000
	중규모	4,000,000	2,930,000	1,070,000
	소규모	1,300,000	1,010,000	290,000
	평균	2,941,667	2,158,000	783,667
대형트롤	대규모	1,751,000	1,294,000	457,000
	중규모	1,458,000	1,159,000	299,000
	소규모	1,222,000	1,148,000	74,000
	평균	1,477,000	1,200,333	276,667
대형선망	대규모	15,487,000	8,060,000	7,427,000
	중규모	12,200,000	7,431,000	4,769,000
	소규모	9,597,000	6,764,630	2,832,370
	평균	12,428,000	7,418,543	5,009,457
소형선망	대규모	38,000	36,000	2,000
	중규모	1,500,000	1,320,000	180,000
	소규모	1,500,000	1,210,000	290,000
	평균	1,012,667	855,333	157,334
기선권현망	대규모	2,000,000	1,920,000	80,000
	중규모	2,000,000	990,000	1,010,000
	소규모	2,000,000	1,310,000	690,000
	평균	2,000,000	1,406,667	593,333
잠수기	대규모	800,000	460,000	340,000
	중규모	220,000	52,500	167,500
	소규모	23,000	5,500	17,500
	평균	347,667	172,667	175,000

제 3 장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검토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문어단지	대규모	150,000	123,000	27,000
	중규모	75,000	90,000	-15,000
	소규모	45,000	48,000	-3,000
	평균	90,000	87,000	3,000
장어통발	대규모	1,200,000	380,000	820,000
	중규모	1,300,000	448,000	852,000
	소규모	450,000	63,000	387,000
	평균	983,333	297,000	686,333
패류형망	대규모	300,000	330,000	-30,000
	중규모	200,000	196,000	4,000
	소규모	19,000	24,000	-5,000
	평균	173,000	183,333	-10,333
정치망	대규모	400,000	328,000	72,000
	중규모	400,000	297,500	102,500
	소규모	103,840	38,500	65,340
	평균	301,280	221,333	79,947

2) 연안어업²⁶⁾

(단위:천원)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전체	대규모	188,893	134,235	54,658
	중규모	136,361	94,789	41,572
	소규모	58,039	39,157	18,882
	평균	127,764	89,394	38,370
연안자망	대규모	120,500	101,150	19,350
	중규모	100,000	65,800	34,200
	소규모	20,000	3,000	17,000
	평균	80,167	56,650	23,517
연안복합	대규모	120,000	65,000	55,000
	중규모	180,000	47,800	132,200
	소규모	17,950	7,900	10,050
	평균	105,983	40,233	65,750

26)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근해 어업 경영실태 및 어업 인식도 조사’. 2010, 17-18면.

Ⅲ.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연안통발	대규모	290,000	208,500	81,500
	중규모	70,000	57,000	13,000
	소규모	13,600	6,300	7,300
	평균	124,533	90,600	33,933
연안연승	대규모	100,000	73,000	27,000
	중규모	70,000	50,000	20,000
	소규모	15,000	3,700	11,300
	평균	61,667	42,233	19,434
연안안강망	대규모	300,000	216,250	83,750
	중규모	70,000	65,000	5,000
	소규모	20,000	15,000	5,000
	평균	130,000	98,750	31,250
연안들망	대규모	290,000	213,500	76,500
	중규모	218,000	157,433	60,567
	소규모	55,000	30,500	24,500
	평균	187,667	133,811	53,856
연안선망	대규모	497,000	358,192	138,808
	중규모	421,000	313,666	107,334
	소규모	90,000	66,800	23,200
	평균	336,000	246,219	89,781
연안개량안강망	대규모	250,000	215,200	34,800
	중규모	180,000	149,600	30,400
	소규모	170,000	146,100	23,900
	평균	200,000	170,300	29,700
연안낭장망	대규모	150,000	66,000	84,000
	중규모	20,050	85,000	-64,950
	소규모	15,000	34,900	-19,900
	평균	61,683	61,967	-284
연안조망	대규모	30,000	21,300	8,700
	중규모	80,000	47,000	33,000
	소규모	28,000	9,500	18,500
	평균	46,000	25,933	20,067

구 분		어업수익(A)	어업비용(B)	어업이익(A-B)
연안선인망	대규모	219,000	156,000	63,000
	중규모	190,000	83,300	106,700
	소규모	193,000	92,300	100,700
	평균	200,667	110,533	90,134

(2)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2010년 한국수산회) 자료 검토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 자료는 연근해어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도, 시·군·구, 수협(업종별, 지구별) 및 한국수산회가 참여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에 따라 전체 어획고를 산출한 후 업종별 톤급구간별로 통계 처리하여 폐업지원금 기준단가 산정을 위한 평년수익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근해어업의 업종별 수익, 비용, 경비율의 종합은 아래와 같다. 업종별 수익이 높은 업종은 대형기저, 대형트롤, 근해선망, 기선선인망 등이며, 낮은 업종은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형망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업종별 경비율을 살펴보면, 대형기저, 근해선망, 근해안강망 등의 경비율이 높으며,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형망 등의 업종 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근해어업

<표> 근해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현황²⁷⁾

(단위:천원)

업 종		총수입 (3년 평균 수익)	총비용	경비율	총소득	평균어업 소득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921,580	805,918	87.45%	115,662	115,662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997,132	861,478	86.40%	135,654	207,239
	100톤~130톤 미만	3,462,557	3,240,076	93.57%	222,481	
	130톤 이상	3,270,470	3,006,887	91.94%	263,58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854,745	727,866	85.16%	126,879	126,879

27) 한국수산회, '201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 2011, 149-150면.

III.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업 종		총수입 (3년 평균 수익)	총비용	경비율	총소득	평균어업 소득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861,943	682,563	79.19%	179,380	179,380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1,008,517	832,630	82.56%	175,887	224,199
	50톤 이상	1,037,074	764,564	73.72%	272,510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1,318,722	1,091,021	82.73%	227,701	227,70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817,400	709,593	86.81%	107,807	171,487
	40톤 이상	956,619	721,453	75.42%	235,166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8,962,953	8,529,154	95.16%	433,799	620,372
	100톤~120톤 미만	-	-	-	-	
	120톤 이상	10,785,353	9,978,409	92.52%	806,944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1,178,930	1,110,680	94.21%	68,250	68,250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271,064	209,757	77.38%	61,307	73,261
	35톤~65톤 미만	290,164	218,531	75.31%	71,633	
	65톤 이상	373,350	286,508	76.74%	86,842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 (선단기준)	2,030,830	1,874,343	92.29%	156,487	180,294
	200톤 이상 (선단기준)	2,014,866	1,810,765	89.87%	204,101	
근해자망	35톤 미만	281,660	229,014	81.31%	52,646	76,131
	35톤~65톤 미만	316,412	238,387	75.34%	78,025	
	65톤 이상	308,780	211,057	68.35%	97,723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797,016	737,453	92.53%	59,563	78,034
	35톤~65톤 미만	998,009	920,876	92.27%	77,133	
	65톤 이상	984,588	887,183	90.11%	97,405	
잡수기	1구	313,596	231,890	73.95%	81,706	64,158
	2구	289,582	240,039	82.89%	49,543	
	3구	481,510	416,655	86.53%	64,855	
	4구	436,579	387,528	88.76%	49,051	
	5구	376,550	300,913	79.91%	75,637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449,144	379,170	84.42%	69,974	93,122
	35톤~65톤 미만	1,380,944	1,289,998	93.41%	90,946	
	65톤 이상	1,187,323	1,068,878	90.02%	118,445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32,179	66,240	50.11%	65,939	91,901
	35톤~65톤 미만	777,284	686,994	88.38%	90,290	
	65톤 이상	1,000,164	880,691	88.05%	119,473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98,263	37,895	38.56%	60,368	60,368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72,515	111,358	64.55%	61,157	61,157
근해연승	20톤 미만	650,360	590,404	90.78%	59,956	69,932
	20톤~35톤 미만	300,743	232,005	77.14%	68,738	
	35톤 이상	474,558	393,456	82.91%	81,102	

2) 연안어업

연안어업의 업종별 수익, 비용, 경비율을 살펴보면 연안복합어업의 3년 평균 수익은 49,600천원, 연안통발어업은 53,953천원, 연안자망어업은 62,238천원, 연안선망 40,397천원, 연안들망 35,342천원, 연안안강망 43,465천원, 연안조망 37,066천원으로 나타나며, 업종별 수익이 가장 높은 업종은 연안자망, 가장 낮은 업종은 연안들망으로 조사되었다.

<표> 연안어업 수익, 비용, 경비율 현황²⁸⁾

(단위 : 천원)

구 분	총수입 (3년 평균 수익)	총비용	경비율	총소득	
연안복합	1톤	28,121	20,928	74.42%	7,193
	2톤	23,314	14,486	62.13%	8,828
	3톤	34,471	23,846	69.18%	10,625
	4톤	44,112	32,005	72.55%	12,107
	5톤	55,232	41,942	75.94%	13,290
	6톤	47,153	33,102	70.20%	14,051
	7톤	61,217	46,906	76.62%	14,311
	8톤	61,997	47,462	76.56%	14,535
	9톤	68,261	53,418	78.26%	14,843
	10톤	72,122	57,274	79.41%	14,848
평균	49,600	37,137	73.53%	12,463	
연안통발	1톤	60,054	52,861	88.02%	7,193
	2톤	48,994	40,166	81.98%	8,828
	3톤	36,222	25,597	70.67%	10,625
	4톤	48,474	36,367	75.02%	12,107
	5톤	55,223	41,933	75.93%	13,290
	6톤	39,476	25,456	64.48%	14,020
	7톤	72,753	58,235	80.05%	14,518
	8톤	70,424	55,576	78.92%	14,848
	평균	53,953	42,024	76.88%	11,929
연안자망	1톤	34,230	27,049	79.02%	7,181
	2톤	44,516	35,444	79.62%	9,072
	3톤	48,106	37,688	78.34%	10,418
	4톤	70,350	58,935	83.77%	11,415

28) 한국수산회 '2011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연구', 2011, 113-115면.

Ⅲ. 수산업법상 과징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구 분		총수입 (3년 평균 수익)	총비용	경비율	총소득
	5톤	55,387	42,346	76.45%	13,041
	6톤	62,648	48,273	77.05%	14,375
	7톤	77,432	62,659	80.92%	14,773
	8톤	75,870	61,032	80.44%	14,838
	9톤	78,352	63,427	80.95%	14,925
	10톤	75,487	60,491	80.13%	14,996
	평균	62,238	49,734	79.67%	12,504
연안선망	1톤	20,044	15,909	79.37%	4,135
	2톤	13,943	7,899	56.65%	6,044
	3톤	24,683	16,611	67.30%	8,072
	4톤	38,780	28,747	74.13%	10,033
	5톤	44,241	32,133	72.63%	12,108
	6톤	43,199	29,685	68.72%	13,514
	7톤	46,924	33,380	71.14%	13,544
	8톤	54,105	40,237	74.37%	13,868
	9톤	52,611	38,669	73.50%	13,942
	10톤	65,437	51,495	78.69%	13,942
	평균	40,397	29,477	71.65%	10,920
연안들망	1톤	20,044	11,333	56.54%	8,711
	2톤	21,028	10,765	51.19%	10,263
	3톤	33,808	22,059	65.25%	11,749
	4톤	32,789	19,663	59.97%	13,126
	5톤	47,049	33,503	71.21%	13,546
	6톤	52,635	39,015	74.12%	13,620
	7톤	41,675	28,013	67.22%	13,662
	8톤	30,539	16,917	55.39%	13,622
	9톤	34,862	21,290	61.07%	13,572
	10톤	38,993	25,403	65.15%	13,590
	평균	35,342	22,796	62.71%	12,546
연안 안강망	1톤	15,322	8,031	52.41%	7,291
	2톤	44,668	36,182	81.00%	8,486
	3톤	40,664	29,270	71.98%	11,394
	4톤	48,704	36,667	75.29%	12,037
	5톤	58,847	45,777	77.79%	13,070
	6톤	50,425	36,566	72.51%	13,859
	7톤	44,613	30,533	68.44%	14,080
	8톤	44,473	30,077	67.63%	14,396
	평균	43,465	31,638	70.88%	11,827

구 분		총수입 (3년 평균 수익)	총비용	경비율	총소득
연안조망	1톤	20,615	16,207	78.62%	4,408
	2톤	29,228	23,840	81.57%	5,388
	3톤	35,940	29,117	81.01%	6,823
	4톤	33,329	26,140	78.43%	7,189
	5톤	34,954	26,911	76.99%	8,043
	6톤	40,976	31,863	77.76%	9,113
	7톤	37,931	28,316	74.65%	9,615
	8톤	40,544	30,318	74.78%	10,226
	9톤	50,747	40,163	79.14%	10,584
	10톤	46,397	35,267	76.01%	11,130
	평균	37,066	28,814	77.90%	8,252

(3) 어업경영조사 보고(수협중앙회 2010년)

<표> 근해어업 어업수입 및 비용 현황²⁹⁾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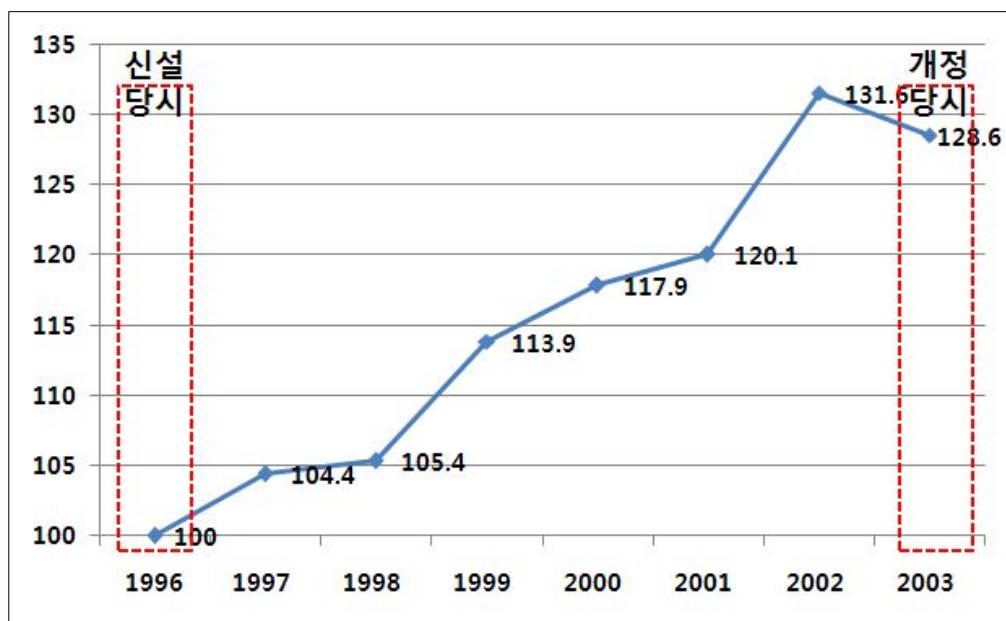
구 분	어업수입	어업비용	수 익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4,727,071	4,549,861	177,210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851,083	825,752	25,331
대형트롤	3,155,078	2,783,758	371,320
동해구기선저인망	556,790	445,046	111,744
서남구기선저인망	1,296,713	1,118,701	178,012
동해구트롤	2,166,927	1,753,393	413,534
대형선망	14,235,209	12,375,852	1,859,357
기선권현망	2,900,661	2,610,422	290,239
근해통발	745,847	699,327	46,520
잠수기	185,952	167,488	18,464
근해안강망	801,268	639,341	161,927
근해채낚기	440,220	375,816	64,404
근해자망	806,226	665,557	140,669
근해연승	763,564	675,138	88,426

29)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보고', 2011.

IV. 과징금 부과기준의 산정

1. 물가상승률 고려안(제1안)

물가상승률 고려(안)은 단순히 현재의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며, 2003년 개정당시부터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림> 과징금 신설당시와 개정당시 물가상승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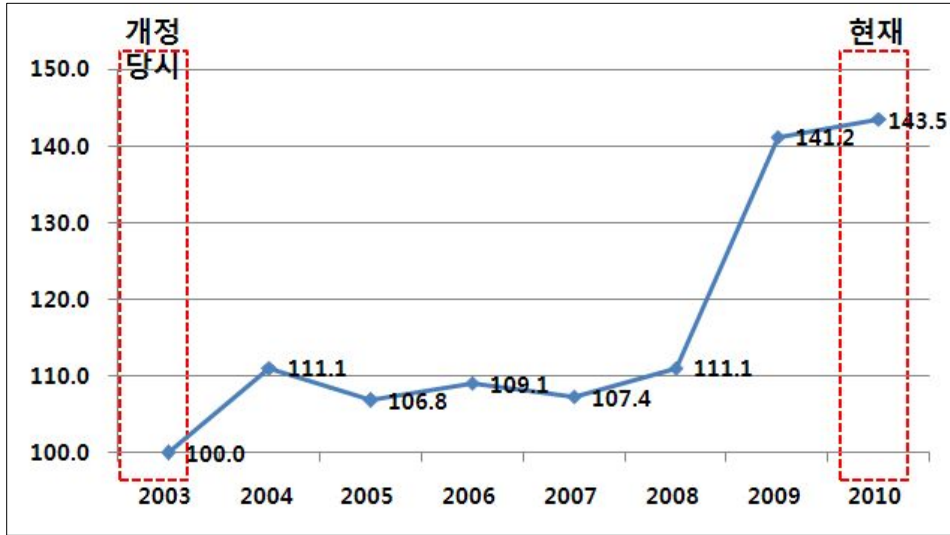
1996년 개정 이후 과징금은 2003년에 1차례 재산정되어 약 30%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26.6%~3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수산부분을 근거로 신설당시를 100으로 기준하여 개정당시의 물가상승률을 도출해보면 약 28.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 개정 시에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을 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선상에서 개정당시와 2010년의 수산부분의 물가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대비 약 4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과징금 개정당시와 2010년 물가상승률 변화추이

물가상승률 고려안은 적정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개정당시의 사례를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추정하였다.

신설당시(1996년)와 개정당시(2003년)의 수산부분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28.6%이며, 실제 개정당시 과징금액 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동 개정안에서는 물가상승률 43.5%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평균 상승률을 업종별로 약 42.1%~약 50% 범위로 제시하였다.

<표> 과거 개정시와 비교

구 분	신설→1차개정	1차개정→현재
물가상승률	28.6%	43.5%
과징금 평균상승률	30.0%	45.0%(안)
업종별 상승률 범위	26.6%~33.3%	42.1%~50%(안)

주) 분석에 사용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발간한 수산부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1996년~2010년)

<표> 물가상승률 고려(제1안) 과징금

(단위 : 만원)

	업종별	신설 (1996년)	현행과징금 (2003년) (A)	어업정지 1일 과징금(제1안) (B)	증가율(% (B/A-1)
근해 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15	19	27	42.1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안강망어업	10	13	19	46.1
	그 밖의 근해어업	5	6	9	50
연안 어업	모든 연안어업	3	4	6	50
구획 어업	모든 구획어업	3	4	6	50
신고 어업	모든 신고어업	1	1	1.5	50
어획물 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	13	19	46.1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	9	13	44.4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	6	9	50
	총톤수 10톤 미만	-	3	4	33.3
물가상승률			28.6%	43.5%	
과징금상승률			26.6%~33.3%	42.1%~50% (안)	

주1) 개선안 과징금은 추정값에서 만단위이하 반올림 값

동 방안의 경우 현행 과징금 체계에서 크게 변화 없이 부과액의 증가만을 가져와 사회적 비용(어업인 순응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작게 발생하며, 산정의 명확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업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 부족하며, 산정된 금액이 실제 어업소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물가상승률 고려(제1안) 장·단점 분석

	장 점	단 점
제1안 (물가상승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체계의 변화정도 약함 - 사회적 비용 발생규모 작음 - 과징금 산정의 명확성 확보 - 과거 개정안과 연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과 실제어업소득과의 차이 존재 - 어업별 형평성 문제 해결 부족 - 불법어업 방지효과 상대적 부족

2. 어업소득 고려안(제2안)

어업소득을 고려한 과징금의 산정은 각 업종별 어업소득을 산출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업종별로 부과할 수도 있으며, 어업소득을 이용한 집단별 부과도 가능하다. 이는 현재 과징금의 수준이 어업수준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과징금 부과액의 증가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어업소득을 고려한 신규 과징금은 1일 조업에 따라 기대되는 어업소득과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초자료 분석에서 검토하였던 한국수산회의 ‘연안 및 근해 어업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2011)’ 결과 및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2010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연평균 수입과 연평균 비용, 업종별 연간 조업일수를 추정하였다.

업종별 어업소득을 고려한 과징금 추정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F_i = \left(\frac{MR_i - MC_i}{OD_i} \right) \times AR_i$$

NF_i = 업종별 어업소득 고려한 과징금

MR_i = 업종별 연평균 수입

MC_i = 업종별 연평균 비용

OD_i = 업종별 연간 조업일수

AR_i = 조정치(80%)

추정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1일 조업 시 어업소득이 가장 높은 대형선망은 약 494만원으로 추정되며,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기선권현망 등은 약 100~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과징금의 추정이론에 근거할 경우 기대소득보다 과징금의 규모가 클 경우 불법 어업의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부분과 타산업의 상대적 소득수준 및 어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 80%의 조정치를 선택하였다.

<표> 어업소득 고려(제2안) 과징금

(단위 : 만원)

업종별	현행과징금 (A)	1일조업시 어업소득			조업일수	어업정지 1일 과징금 (제2안)(B)	증가율(%) (B/A-1)	
		감척사업 기준단가	어업경영 조사보고	평균				
근해어업	쌍끌이대형 기선저인망	19	64.6	55.2	59.9	321	48	152.6
	대형트롤	19	108.4	176.8	142.6	210	114	500.0
	대형선망	19	247.2	740.8	494.0	251	395	1,978.9
	기선권현망	19	107.3	172.8	140.0	168	112	489.5
	외끌이대형 기선저인망	13	52.3	11.5	31.9	221	26	100.0
	서남구기선저인망	13	72.2	61.4	66.8	290	53	307.7
	동해구트롤	13	112.8	272.1	192.4	152	154	1,084.6
	근해안강망	13	33.1	68.6	50.8	236	41	215.4
	근해채낚기	6	58.6	51.5	55.1	125	44	633.3
	근해자망	6	47.6	87.9	67.8	160	54	800.0
	잠수기	6	69.5	13.8	41.6	134	33	450.0
	근해연승	6	27.0	34.1	30.6	259	24	300.0
	근해통발	6	37.2	18.6	27.9	250	22	266.7
	동해구기선저인망	6	68.6	60.4	64.5	185	52	766.7
연안·구획어업	4		-	8.2	148	6.6	13.7	

주1) 1일조업시 어업소득은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2011)’, 한국수산회의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연구 결과(2011)의 평균값을 적용.

주2) 근해어업 조업일수는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2011)’의 2010년 업종별 총출어일 수를 기준으로 사용, 연안어업은 한국수산회 ‘연안어업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자료를 사용

주3) 개선안 과징금은 추정값에서 만단위이하 반올림 값

동 방안의 경우 현행 과징금 부과액이 상당 수준 상승하게 되며, 실제 어업소득과 과징금간의 차가 크지 않게 되어 금전적 제재조치로써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산정에 있어서 표본어선의 경영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도출하여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점으로는 과징금의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만 등 순응비용이 높게 발생하게 되며, 규모별 형평성 문제 역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어업소득 고려(제2안) 장·단점 분석

	장 점	단 점
제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소득을 고려하여 금전적 제재 조치 실효성 강화 - 어업별 형평성 문제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의 상승폭 과다로 어업인 순응 비용 높음 - 규모별 형평성 문제 발생 - 2010년 경영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객관성 부족

3.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안(제3안)

앞서 규모별 어업소득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업종에서도 규모별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제3안인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안은 앞서 어업소득고려안에 어업별 규모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정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업소득 고려(제2안)에서 추정된 어업정지 1일 과징금을 기준으로 각 업종별 평균대비 규모별 비율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업종별 평균대비 규모별 비율은 한국수산회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 연구(2011)’에서 규모별 평균소득 대비 각 규모집단별 소득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어업소득이 ‘소’가 135,654천원, ‘중’이 222,481천원, ‘대’가 263,583천원으로 평균 어업소득은 207,239천원이며 각각 평균 어업소득으로 나누어주면 업종별 평균대비 비율이 도출된다.

<표> 업종별 평균 대비 비율 추정 예시

(단위 : 천원)

업종별	규모구분	총수입 (A)	총비용 (B)	어업소득 (C)=(A)-(B)	평균 어업소득 (D)	업종별 평균대비 비율 (C)/(D)
대형기선 저인망 (쌍끌이)	소(100톤 미만)	997,132	861,478	135,654	207,239	65.5%
	중(100톤~130톤 미만)	3,462,557	3,240,076	222,481		107.4%
	대(130톤 이상)	3,270,470	3,006,887	263,583		127.2%

<표>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제3안) 과징금

(단위 : 만원)

업종별	규모구분	현행 과징금 (A)	1일 과징금 기준	업종별 평균대비 비율	어업정지 1일 과징금(제3안) (B)	증가율(%) (B/A-1)	
근해어업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소(100톤 미만)	19	47.9	65.5%	31	63.2
		중(100톤~130톤 미만)		47.9	107.4%	51	168.4
		대(130톤 이상)		47.9	127.2%	61	221.1
	대형트롤		19	114.1	100.0%	114	500.0
	대형선망	소(100톤 미만)	19	395.2	69.9%	276	1352.6
		대(100톤 이상)		395.2	130.1%	514	2605.3
	기선권 현망	소(200톤 미만)	19	112.0	86.8%	97	410.5
		대(200톤 이상)		112.0	113.2%	127	568.4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3	25.5	100.0%	26	68.4
	서남구기선저인망		13	53.4	100.0%	53	210.5
	동해구 트롤	소(40톤 미만)	13	154.0	62.9%	97	442.1
		대(40톤 이상)		154.0	137.1%	211	1042.1
	근해안 강망	소(35톤 미만)	13	40.7	76.3%	31	94.7
		중(35톤~65톤 미만)		40.7	98.8%	40	142.1
		대(65톤 이상)		40.7	124.8%	51	200.0

업종별	규모구분	현행 과징금 (A)	1일 과징금 기준	업종별 평균대비 비율	어업정지 1일 과징금(제3안) (B)	증가율(%) (B/A-1)	
근해채 낚기	소(35톤 미만)	6	44.1	83.7%	37	163.2	
	중(35톤~65톤 미만)		44.1	97.8%	43	194.7	
	대(65톤 이상)		44.1	118.5%	52	242.1	
	근해자망	소(35톤 미만)	6	54.2	69.2%	37	163.2
		중(35톤~65톤 미만)		54.2	102.5%	56	263.2
		대(65톤 이상)		54.2	128.4%	70	336.8
	잠수기		6	33.3	100.0%	33	450.0
	근해연승	소(20톤 미만)	6	24.5	85.7%	21	78.9
		중(20톤~35톤 미만)		24.5	98.3%	24	94.7
대(35톤 이상)		24.5		116.0%	28	115.8	
근해통발	소(35톤 미만)	6	22.3	75.1%	17	57.9	
	중(35톤~65톤 미만)		22.3	97.7%	22	84.2	
	대(65톤 이상)		22.3	127.2%	28	115.8	
동해구기선저인망		6	51.6	100.0%	52	242.1	
연안·구획어업	소(3톤미만)	4	6.6	68%	4.5	2.6	
	중(3톤이상~6톤 미만)		6.6	101%	6.7	14.2	
	대(6톤이상)		6.6	113%	7.5	18.4	

주1) 1일 과징금 기준은 제2안의 어업정지 1일 과징금을 사용

주2) 업종별 평균대비 비율은 한국수산회의 ‘연안 및 근해어업 감척사업 기준단가 산정연구 (2011)’에서 규모별 평균소득 대비 각 규모집단별 소득의 비율을 사용

주3) 개선안 과징금은 추정값에서 만단위이하 반올림 값

동 방안의 경우 역시 현행 과징금 부과액이 상당 수준 상승하게 되며, 어업소득 및 규모를 다각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조치로써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산정에 있어서 표본어선의 경영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도출하여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단점으로는 과징금의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만 등 순응비용이 높게 발생하게 된다.

<표> 어업소득·규모별 형평성 고려(제3안) 장·단점 분석

	장 점	단 점
제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소득을 고려하여 금전적 제재 조치 실효성 강화 - 어업별 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문제 완화 - 소득과 규모를 다각화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의 상승폭 과다로 어업인 순응비용 높음 - 2010년 경영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객관성 부족

4. 복합적 고려안(제4안)

복합적 고려안은 제1안의 물가상승률과 제3안의 어업소득 및 어업별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NF_i = (OF_i \times IR \times AR_{ir}) + (NSF_i \times AR_{sr})$$

NF_i = 업종별 물가상승률 및 소득,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OF_i = 업종별 현행(2003년 개정) 과징금액

IR = 물가상승률(45%)

AR_{ir} = 물가상승률 고려의 가중치비율

AR_{sr} = 소득·규모 고려의 가중치비율

NSF_i = 업종별 소득·규모 고려 과징금액(제3안)

그러나 제4안의 경우 물가상승률(AR_{ir})과 어업소득·규모별 가중치(AR_{sr})를 어떻게 추정하는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에 대하여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하였다.

조사결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약 84.3%~97.5%로 나타나 어업소득·규모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징금의 산정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징금의 추정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중치를 90%, 어업소득·규모에 10%를 두고 산정하였다.

추정된 금액을 이용하여 복합적 고려안(제4안)의 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현행 과징금과 제4안의 과징금액을 비교해보면 어업소득이 높은 대형선망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복합적 고려(제4안) 과징금액

(단위 : 만원)

업종구분	규모구분	현행 과징금 (A)	증가액 구분			추정값 (A)+(D)	어업정지 1일 과징금 (제4안) (E)	증가율 (%) (E/A-1)
			물가 상승률 고려 증가액 (B)	어업 소득· 규모 고려 증가액 (C)	총 증가액 (D)			
쌍끌이대형기선 저인망	100톤 미만	19	7.7	1.2	8.9	27.9	28	47.4
	100톤~130톤 미만		7.7	3.2	10.9	29.9	30	57.9
	130톤 이상		7.7	4.2	11.9	30.9	31	63.2
대형트롤		19	7.7	9.5	17.2	36.2	36	89.5
대형선망	소(100톤 미만)	19	7.7	25.7	33.4	52.4	52	173.7
	대(100톤 이상)		7.7	49.5	57.2	76.2	76	300.0
기선권현망	소(200톤 미만)	19	7.7	7.8	15.5	34.5	35	84.2
	대(200톤 이상)		7.7	10.8	18.5	37.5	37	94.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3	5.3	1.3	6.6	19.6	20	53.8
서남구기선저인망		13	5.3	4.0	9.3	22.3	22	69.2
동해구트롤	소(40톤 미만)	13	5.3	8.4	13.7	26.7	27	107.7
	대(40톤 이상)		5.3	19.8	25.1	38.1	38	192.3
근해안강망	소(35톤 미만)	13	5.3	1.8	7.1	20.1	20	53.8
	중(35톤~65톤 미만)		5.3	2.7	8.0	21.0	21	61.5
	대(65톤 이상)		5.3	3.8	9.1	22.1	22	69.2
근해채낚기	소(35톤 미만)	6	2.4	3.1	5.5	11.5	11	83.3
	중(35톤~65톤 미만)		2.4	3.7	6.1	12.1	12	100.0
	대(65톤 이상)		2.4	4.6	7.0	13.0	13	116.7
근해자망	소(35톤 미만)	6	2.4	3.1	5.5	11.5	12	100.0
	중(35톤~65톤 미만)		2.4	5.0	7.4	13.4	13	116.7
	대(65톤 이상)		2.4	6.4	8.8	14.8	15	150.0
잡수기		6	2.4	2.7	5.1	11.1	11	83.3
근해연승	소(20톤 미만)	6	2.4	1.5	3.9	9.9	10	66.7
	중(20톤~35톤 미만)		2.4	1.8	4.2	10.2	10	66.7
	대(35톤 이상)		2.4	2.2	4.6	10.6	11	83.3
근해통발	소(35톤 미만)	6	2.4	1.1	3.5	9.5	9	50.0
	중(35톤~65톤 미만)		2.4	1.6	4.0	10.0	10	66.7
	대(65톤 이상)		2.4	2.2	4.6	10.6	11	83.3

업종구분	규모구분	현행 과징금 (A)	증가액 구분			추정값 (A)+(D)	어업정지 1일 과징금 (제4안) (E)	증가율 (%) (E/A-1)
			물가 상승률 고려 증가액 (B)	어업 소득· 규모 고려 증가액 (C)	총 증가액 (D)			
동해구기선저인망		6	2.4	4.6	7.0	13.0	13	116.7
모든연안어업	소(3톤미만)	4	1.6	0.2	1.8	5.8	6	50.0
	중(3톤이상-6톤미만)		1.6	0.4	2.0	6.0	6	50.0
	대(6톤이상)		1.6	0.5	2.1	6.1	6	50.0
모든구획어업	소(3톤미만)	4	1.6	0.2	1.8	5.8	6	50.0
	중(3톤이상-6톤미만)		1.6	0.4	2.0	6.0	6	50.0
	대(6톤이상)		1.6	0.5	2.1	6.1	6	50.0

주) 개선안 과징금은 추정값에서 만단위이하 반올림 값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종합안

< 수산업법 >

<p>제91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 수산업법 시행령 >

<p>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p>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
-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 4 장 「수산업법」상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

I. 과징금 부과기준 재조정방안

수범자(어업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형에 속하거나 같은 내용 및 정도의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³⁰⁾

또한 행위유형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계설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야 할 위반행위 유형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특별 억제는 물론 일반 억제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행위까지도 과잉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³¹⁾

<표> 참고입법례 : 과징금 산정방법

법률명	부과기준 산정	비 고
대외무역법	수출입신고금액	과징금 상한액- 3천만원 이하
보험업법	신용공여액, 채권 또는 주식 장부가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거래금액	거래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매출가액	
금융지주회사법	신용공여액, 채권 또는 주식 장부가액	10억원~100억이하, 100억초과~1천억이하, 1천억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로 구분하여 과징금부과비율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출액	

30) 신봉기,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제1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172-177면.

31) 김보현 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81면.

법률명	부과기준 산정	비 고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공여액, 가지급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의 2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출액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출액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실제거래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	
은행법	신용공여액, 주식 장부가액, 초과투자액 등	
청소년보호법	정기간행물의 발행-유통-수입 2천만원이하	위반횟수별 산정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불법배출이익의 2배이상 10배이하	
임대주택법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액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곧,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부당이득)의 박탈과 행정제재적 요소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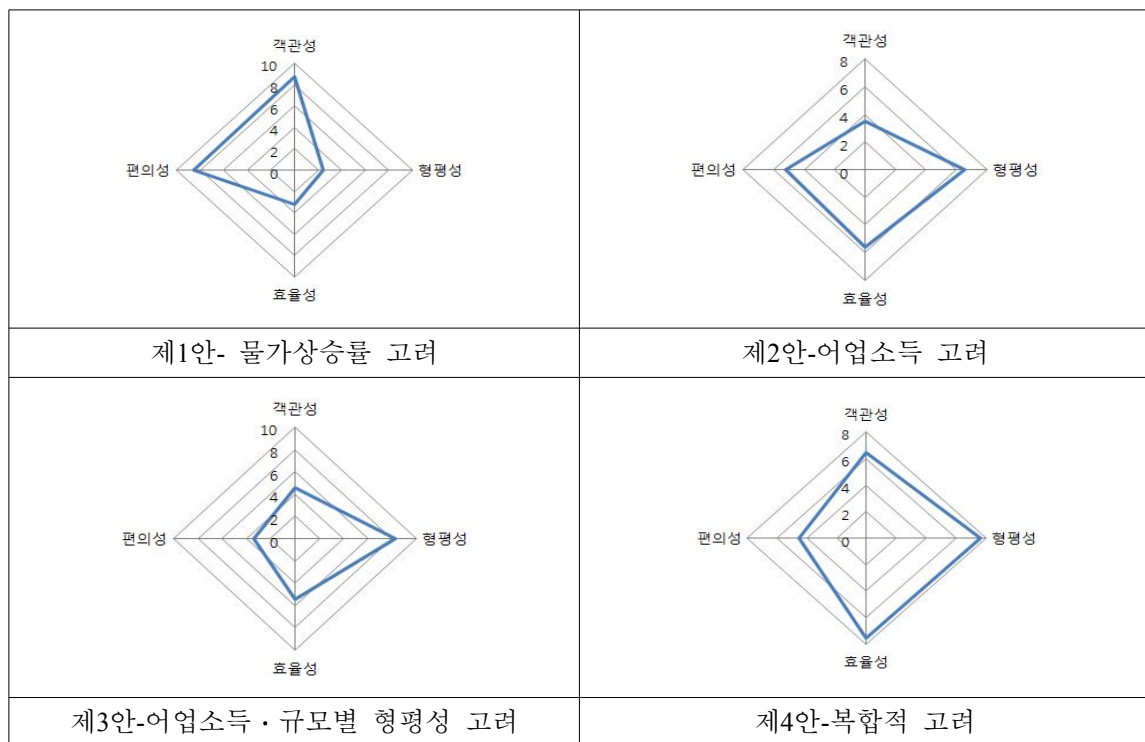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고려시 되는 사항은, 부과액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이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16개의 개별 법률상 부과기준은 매출액 또는 다양한 용어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부당이득)에 대하여 비율을 곱함으로써 (100분의 OO) 기준을 삼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서 별개의 조문 또는 별표상 기준을 통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개념 및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통하여 부과기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금액의 부과시 의무위반행위의 동기, 횡수, 성격 등을 고려하고 각 개별법상 특성에 상응하는 가중·감경기준을 규정하여 집행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와 부과금액 간 처분양정을 고려할 여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경우 이의 정비를 요한다.

사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의 변형된 과징금의 형태이지만,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사업자체가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선택적 부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실무를 고려할 때, 공익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징금이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같음한 제도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선택적 부과보다는 공익요건을 통하여 과징금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²⁾

앞서 물가상승률과 어업소득, 어업규모, 복합적 부문에 대하여 총 4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4개의 과징금 개선안 중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객관성,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4안의 복합적 고려안이 상대적으로 총점(26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요인별·개선안별 비교



32) 최영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법제처, 2001, 12면.

<표> 과징금액 개선안 종합

(단위 : 만원)

업종구분	규모구분	현행	과징금액 개선안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00톤 미만	19	28
	100톤~130톤 미만		30
	130톤 이상		31
대형트롤		19	36
대형선망	소(100톤 미만)	19	52
	대(100톤 이상)		76
기선권현망	소(200톤 미만)	19	35
	대(200톤 이상)		37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3	20
서남구기선저인망		13	22
동해구트롤	소(40톤 미만)	13	27
	대(40톤 이상)		38
근해안강망	소(35톤 미만)	13	20
	중(35톤~65톤 미만)		21
	대(65톤 이상)		22
근해채낚기	소(35톤 미만)	6	11
	중(35톤~65톤 미만)		12
	대(65톤 이상)		13
근해자망	소(35톤 미만)	6	12
	중(35톤~65톤 미만)		13
	대(65톤 이상)		15
잠수기		6	11
근해연승	소(20톤 미만)	6	10
	중(20톤~35톤 미만)		10
	대(35톤 이상)		11
근해통발	소(35톤 미만)	6	9
	중(35톤~65톤 미만)		10
	대(65톤 이상)		11
동해구기선저인망		6	13
모든연안어업		4	6
모든구획어업		4	6
모든신고어업		1	1.5
어획물 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13	19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9	13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6	9
	총톤수 10톤 미만	3	4

II. 수산업법상 과징금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1. 입법형식상 일반기준의 설정을 통한 부과기준 명확화

일반적으로 행정상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형식은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하며 최종적으로 세분화된 적용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상 “별표”의 형식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위법령상 별표의 입법형식은 크게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성되어지며 일반기준에서는 해당 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질, 의무위반의 내용과 횟수, 기일산정, 가중·감경 등을 규정하고 개별기준에서 세분화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관계국민의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요소의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다.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형식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여 위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 등을 포섭하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안의 마련이 요망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산업법상 과징금이 영업정지 내지 제한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첫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물가 등 외부적 경제상황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상응하여 영업정지 기간, 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³³⁾

그리고 무엇보다 과징금 금액산정에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그 정지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영업이 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타격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33) 예를 들어 조업정지기간 × 기간 당 부과금액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이런 사정도 고려)이 되어야 제도의 실익도 있고 형평에도 맞을 것으로 고려된다.

3. 과징금과 기타 금전적 제재수단 간 병과의 회피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1) 과징금- 벌금의 병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과잉제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벌칙의 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폐지하고,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또는 과징금액에서 벌금 금액을 감액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벌금)은 존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2 참조)

1) 부당이득 환수적(제재적) 과징금

행정협력적 의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병과 되는 형벌규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한 중대한 의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을 존치하도록 하되, 벌금이 병과형으로 규정된 경우로서 과징금과 벌금이 모두 불법이익 환수적 성격이 있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상 몰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벌금액 또는 몰수액 상당의 금액을 감경하는 규정을 설정하도록 한다.

※ 입법안 예시(대통령령상의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벌금액 상당액을 감경한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행정협력적 의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벌금만 규정되는 등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벌을 폐지하도록 하되, 의무위반행위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한 중대한 의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과징금 외에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규정을 존치하도록 한다.

- < 행정협력적 의무 사항 >**
- 1. A 유형: 신고, 보고 등
 - A-1) 신고의무 위반
 - A-2) 통보의무 위반
 - A-3) 보고의무 위반
 - A-4) 등록의무 위반
 - A-5) 신청의무 위반
 - 2. B 유형: 검사, 조사 등
 - B-1) 검사의무 위반
 - B-2) 조사거부금지 위반
 - B-3) 출석요구 불응
 - B-4) 자료제출의무 위반
 - 3. C 유형: 보관, 게시 등
 - C-1) 작성 및 비치, 보존의무 위반
 - C-2) 보관의무 위반
 - C-3) 게시의무 위반
 - C-4) 표시의무 위반
 - C-5) 휴대의무 위반
 - C-6) 반납의무 위반
 - 4. D 유형: 유사명칭 사용금지
 - D-1) 비영리 단체(협회, 연구원, 정당, 국립대학병원 등)의 유사명칭사용
 - D-2) 자격의 유사명칭사용
 - D-3) 공기업(공사, 공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 D-4) 은행 등(은행, 금융회사, 금융공단)의 유사명칭 사용
 - D-5) 기타 유사명칭 사용

(2) 과징금- 과태료의 병과

과태료와 과징금은 처분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달라 법리상 중복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와 과징금 모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일반 국민은 이를 이중 제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금전을 내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제재 부과 시 다른 제재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되, 과태료와 과징금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현저히 커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액이 큰 제재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공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도록 한다.

<표> 과징금과 과태료

구 분		과태료	과징금
공통점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차 이 점	목적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위반에 대한 유인 제거 • 제재를 통한 억제 • 제재의 실효성 확보
	대상 행위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행정상 의무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으로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기되는 행위 • 영업정지가 곤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위반행위 • 기타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로 얻을 영업이익 • 위반행위의 가벌성
	부과 절차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행정관청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이 시원적으로 부과(이의제기)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행정관청이 부과 →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이의제기시)
	법적 효과	• 가산금·중가산금 규정	• 일부 법령에서 가산금 규정

1) 부당이득 환수적(제재적) 과징금

제재적 과징금은 대부분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사유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거나 중복 규정되는 경우에도 중복 부과금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사유와 과태료 부과사유를 조정하여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함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출액 등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등 영업수행상의 의무 위반과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행정협력적 의무위반은 과징금,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와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과징금의 전제가 되는 영업정지사유와 과태료 부과사유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거나, 일부 법령에서는 중복부과를 방지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표> 과태료·과징금 중복 부과 금지에 대한 특례규정 현황

번호	법령	과징금	과태료	특례규정
1	식품위생법	영업대체과징금 (2억원 이하)	1천만원 ~ 3백만원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제 102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영업대체과징금 (2억원 이하)	3백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제 48조)
3	건설산업기본법	영업대체과징금 (1억원)	500만원 이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미부과(제100조의2)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업대체과징금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 50만원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제 95조)
5	항공법	영업대체과징금 (50억원, 10억원, 5억원)	500만원 ~ 30만원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제 181조)
6	해운법	영업대체과징금 (3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과징금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제 60조)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영업대체과징금 (2천만원)	5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제 71조)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재적 과징금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징금액으로 부과(제10조제1항))

번호	법 령	과징금	과태료	특례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9	철도사업법	영업대체과징금 (1억원)	1천만원 ~50만원	과징금 부과시 과태료 미부과 (제52조)

나아가 일부 법률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한 금전적 제재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부과를 금지하거나 부과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사례도 있다.

<표> 중복적 금전제재 방지규정 입법사례

번호	법 령	특례규정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른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³⁴⁾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동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동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상동
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배출부과금 부과시 배출부과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하고, 벌금 부과시 과징금 미부과 ³⁵⁾

34)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5) 제12조 (과징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번호	법 령	특례규정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징금 부과 시 의무공급량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 ³⁶⁾
7	청소년보호법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폐쇄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미부과 ³⁷⁾
8	조세범처벌법	과태료(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 미부과 ³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규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제재가능성이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별도의 금전적 제재수단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가 허용하면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과 과태료간의 병과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형평의 문제 발생(과태료는 결정재량이 없어 반드시 부과 필요)하는 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개선 세부기준상의 예외사유(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양자의 병과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불문하고 영업정지 부과사유와 과태료 부과사유를 조정하여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과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징금(영업정지),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과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37) 제49조(과징금)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형트롤 어업의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대형트롤 어업의 조업구역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근해로 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고 있어 대형트롤 어업에 대한 법적용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1호에서는 대형트롤 어업에 한하여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³⁹⁾ 실제로 동법에 대한 행정처벌 건수가 2010년 이후 1건도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수산업법 제91조에서 어업인이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으로 어업경영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다른 업종에는 없는 유독 대형트롤어업에 대하여만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 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

대형트롤어선은 선장을 포함하여 15명 정도가 승선하여 조업하는 어선으로 조업기간 중 정치처분이 된다면 선주는 물론이고 총어획고에 의한 비율급제 임금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어선원들의 이탈로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나 다시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영업자금 및 유대 연체로 이어져 선주가 도산하고 선원은 실직하는 등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개정(삭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 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과징금은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제재수단이며, 불균형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처분은 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들을 현재의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어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수산업 분야에서 어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대체 납입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실제 어업소득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위반조업 적발시 과징금만 납부하면 조업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어업의 종별, 규모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법학적·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였다.

우선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는 1996년 당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어업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어업정지 1일당 최고 15만원(근해어업 중 대형기선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선망, 기선선인망)에서 최저 1만원(신고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당시 어업별 소득을 산정하여 그 기준가격과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곱하고 여기에 어업정지 기간을 다시 곱하는 산출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이렇게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3년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한편, 어획물 운반업의 정지처분이 초래하는 어획물운반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였다.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30%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어업정지 1일당 최고 19만원(근해어업 중 대형기선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선망, 기선선인망)에서 최저 1만원(신고어업)으로 개정되었으며, 어획물운반업의 경우에는 톤수별로 최고 13만원(총톤수 70톤 이상)에서 최저 3만원(총톤수 10톤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었다.

위와 같이 1996년 제정과 2003년의 개정 이외에는 「수산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금액과 어업소득과의 괴리, 업종별·규모별 차별적 적용 미흡,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미흡, 타 제재수단과 중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과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한 입법적 분석과 더불어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수산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경우 일반적인 규정형식에 비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요소의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둘째, 수산업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 내지 제한 등의 처분에 대하여 대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과징금 부과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어업소득 및 어업별 규모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의 부과금액을 각각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장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에 가중치를 90%, 어업소득·규모에 10%를 두고 산정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고려를 통한 재조정방안은 과징금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형트롤 어업의 조업구역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근해로 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고 있어 대형트롤 어업에 대한 법적용은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개정(삭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입법례를 살펴 볼 때,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규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천만원 이상인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징금,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과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는 과징금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그 감경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어업예방교육이나, 지도선 승선체험,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병민, 금지행위의 위반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사례 분석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5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3
- 농림수산식품부,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9
- 김재광·최철호·강문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Ⅰ)」,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
- 박영도·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08
-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영도·박수현,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3
- 배영길,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03
-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05
- 이정삼 외,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 이종근, “수산업법의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0.07
- 임송학, 과징금의 구분과 법적 성질, 해양수산법제 통권6호, 해양수산부, 2001.10
- 채우석, “과징금 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2002
- 최영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 통권 제527호, 법제처, 2001.11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통권18호, 2007
- 황기형 외, “어업 모니터링체제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12
- 어업생산통계시스템 : <http://fs.fips.go.kr>
- 통계청 : <http://kosis.kr>

부 록

[부 록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 과징금 부과현황(연도별) >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총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582	1952	804	
근해 어업	소 계	502	372	262	
	대형기저(외)	8	3	2	
	대형기저(쌍)	15	5	4	
	동해구기저	12	7	3	
	서남구기저(외)	5	4	3	
	서남구기저(쌍)	5	5	5	
	대형트롤	16	2	2	
	동해구트롤	9	6	0	
	대형선망	1	1	1	
	소형선망	18	7	2	
	근해채낚기	59	37	17	
	근해자망	103	85	67	
	근해안강망	41	32	23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10	8	5	
	문어단지	2	2	2	
	근해통발	59	51	47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연승	27	20	15	
	근해형망	71	62	39	
	기선권현망	12	8	1	
	잠수기	29	27	24	
연안 어업	소 계	1935	1513	499	
	개량안강망	74	64	32	
	선망	75	62	33	
	통발	231	184	58	
	조망	31	29	9	
	선인망	4	3	1	
	자망	907	700	275	
	들망	12	12	7	
	복합	601	459	84	
구획 어업	소 계	145	67	43	
	정치성	38	9	1	
	새우조망	97	54	41	
	실뱀장어안강망	3	1	0	
	패류형망	7	3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부산시)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78	43	23	
근해 어업	소 계	46	13	13	
	대형기저(외)	3	1	1	
	대형기저(쌍)	13	4	4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16	2	2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1	1	1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6	1	1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5	3	3	
	근해연승	2	1	1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2	30	10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12	10	5	
조망					
선인망					
자망		6	6	2	
들망		1	1		
복합		13	13	3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인천시)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20	103	64	
근해 어업	소 계	72	58	43	
	대형기저(외)	3	1	1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1	1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2	2	1	
	근해자망	42	39	32	
	근해안강망	12	7	2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문어단지	1	1	1	
	근해통발	3	3	3	
	근해연승				
	근해형망	8	5	3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47	45	21	
	개량안강망	1	1	1	
	선망				
	통발	1	1		
	조망				
	선인망				
	자망	41	39	19	
	들망				
	복합	4	4	1	
	소 계	1			
구획 어업	정치성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소 계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남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861	541	163	
근해 어업	소 계	67	50	37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기저(외)	0	0	0	
	대형기저(쌍)	1	0	0	
	동해구기저	0	0	0	
	서남구기저(외)	4	4	3	
	서남구기저(쌍)	0	0	0	
	대형트롤	0	0	0	
	동해구트롤	0	0	0	
	대형선망	0	0	0	
	소형선망	1	1	0	
	근해채낚기	0	0	0	
	근해자망	29	19	17	
	근해안강망	4	3	2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0	0	0	
	문어단지	0	0	0	
	근해통발	13	11	11	
	근해연승	5	2	1	
	근해형망	0	0	0	
	기선권현망	4	4	0	
잠수기	6	6	3		
연안 어업	소 계	698	457	104	
	개량안강망	5	1	3	
	선망	19	17	6	
	통발	85	59	12	
	조망	0	0	0	
	선인망	2	1	0	
	자망	248	138	46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들망	10	10	7	
	복합	329	231	30	
구획 어업	소 계	96	34	22	
	정치성	18	5	1	
	새우조망	70	27	21	
	실뱀장어안강망	2	0	0	
	패류형망	6	2	0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남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540	482	170	
근해 어업	소 계	95	76	69	
	대형기저(외)	2	1		
	대형기저(쌍)	1	1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1			
	서남구기저(쌍)	5	5	5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7	1	1	
	근해채낚기	5	4	4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자망	6	5	5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6	4	4	
	문어단지				
	근해통발	31	30	28	
	근해연승	1	1	1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8	4	1	
	잠수기	22	20	20	
연안 어업	소 계	375	336	71	
	개량안강망				
	선망	5	3	3	
	통발	95	82	23	
	조망	8	8	1	
	선인망				
	자망	146	133	26	
	들망				
	복합	121	110	18	
구획 어업	소 계	70	70	30	
	정치성	43	43	10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새우조망	27	27	20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북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25	215	53	
근해 어업	소 계	42	34	13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6	3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5	3	3	
	근해안강망	1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통발				
	근해연승	6	4		
	근해형망	23	23	9	
	기선권현망				
	잠수기	1	1	1	
연안 어업	소 계	180	178	40	
	개량안강망	31	31	8	
	선망	2	2		
	통발	6	6	3	
	조망	18	17	5	
	선인망	2	2	1	
	자망	67	66	12	
	들망				
	복합	54	54	11	
구획 어업	소 계	3	3		
	정치성	2	2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1	1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북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41	182	92	
근해 어업	소 계	52	37	11	
	대형기저(외)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7	4	2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4	1		
	대형선망				
	소형선망	1			
	근해채낚기	24	17	4	
	근해자망	13	13	5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1	1		
	문어단지				
	근해통발	2	1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188	145	81	
	개량안강망				
	선망	5	1		
	통발	4	4	3	
	조망				
	선인망				
	자망	169	135	77	
	들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복합	10	5	1	
구획 어업	소 계	1	0	0	
	정치성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충남도)

충청남도(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17	258	143	
근해 어업	소 계	73	65	52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2	2	1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4	4	4	
	근해안강망	23	21	18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붕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3	3	1	
	문어단지				
	근해통발	2	2	1	
	근해연승				
	근해형망	39	33	27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38	193	91	
	개량안강망	30	24	13	
	선망	44	39	24	
	통발	13	11	5	
	조망	5	4	3	
	선인망				
	자망	110	87	33	
	낭장망	1	1		
	복합	35	27	13	
구획 어업	소 계	6			
	정치성	6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울산시)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0	12	8	
근해 어업	소 계	2	1	1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2	1	1	
	근해안강망				
	근해붕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2	11	7	
	개량안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선망				
	통발	6	2	1	
	조망				
	선인망				
	자망	11	7	6	
	들망				
	복합	5	2		
구획 어업	소 계	6			
	정치성	6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기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50	47	27	
근해 어업	소 계	5	5	3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1	1	1	
	근해자망	1	1	0	
	근해안강망	1	1	1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1	1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1	1	0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45	42	24	
	개량안강망	7	7	7	
	선망				
	통발	8	8	5	
	조망				
	선인망				
	자망	26	25	10	
	들망				
	복합	4	2	2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강원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26	86	52	
근해 어업	소 계	30	17	5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4	2	1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5	5		
	대형선망				
	소형선망	1			
	근해채낚기	18	10	4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2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92	66	46	
	개량안강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선망				
	통발	1	1	1	
	조망				
	선인망				
	자망	80	61	43	
	들망				
	복합	11	4	2	
구획 어업	소 계	4	3	1	
	정치성	3	2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1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제주도)

(2008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7	25	19	
근해 어업	소 계	18	15	15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3	2	2	
	근해자망	1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1	1	1	
	근해연승	13	12	12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18	10	4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3	3	1	
들망					
복합		15	7	3	
구획 어업	소 계	1			
	정치성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총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997	1366	654		
근해 어업	소 계	382	294	231	
	대형기저(외)	9	6	6	
	대형기저(쌍)	18	9	9	
	동해구기저	9	4	1	
	서남구기저(외)	2	1	1	
	서남구기저(쌍)	10	6	6	
	대형트롤	27	14	12	
	동해구트롤	5	3	1	
	대형선망	2	1	1	
	소형선망	5	4	3	
	근해채낚기	47	41	22	
	근해자망	62	54	45	
	근해안강망	39	31	31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10	5	4	
	문어단지	2	2	1	
	근해통발	47	46	41	
	근해연승	22	19	15	
	근해형망	40	27	23	
	기선권현망	6	1	0	
	잠수기	20	20	9	
	연안 어업	소 계	1497	1019	389
개량안강망		62	53	35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선망	56	53	36	
	통발	134	91	24	
	조망	17	16	11	
	선인망	2	2	0	
	자망	698	506	232	
	들망	16	15	4	
	복합	512	283	47	
구획 어업	소 계	115	51	32	
	정치성	35	16	3	
	새우조망	75	31	29	
	실뱀장어안강망	1	0	0	
	패류형망	4	4	0	
기타	소 계	3	2	2	
	어획물운반선	2	1	1	
	양식장관리선	1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부산시)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00	53	30	
근해 어업	소 계	48	22	22	
	대형기저(외)	4	1	1	
	대형기저(쌍)	13	6	6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트롤	21	10	10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2	1	1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4	1	1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1	1	1	
	근해연승	3	2	2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들망				
	복합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인천시)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79	68	53	
	소 계	47	38	34	
근해 어업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2	1	1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25	26	26	
	근해안강망	3	2	2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6	1	1	
	문어단지	1	1		
근해통발	1	1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연승				
	근해형망	9	6	4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1	29	19	
	개량안강망	3	3	3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24	23	16	
	들망				
	복합	4	3		
	소 계	1	1		
구획 어업	정치성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남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690	380	125	
근해 어업	소 계	34	29	18	
	대형기저(외)	3	3	3	
	대형기저(쌍)	0	0	0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기저	0	0	0	
	서남구기저(외)	2	1	1	
	서남구기저(쌍)	1	0	0	
	대형트롤	0	0	0	
	동해구트롤	0	0	0	
	대형선망	0	0	0	
	소형선망	1	1	1	
	근해채낚기	0	0	0	
	근해자망	14	11	9	
	근해안강망	0	0	0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1	1	1	
	문어단지	0	0	0	
	근해통발	1	1	1	
	근해연승	1	1	1	
	근해형망	0	0	0	
	기선권현망	0	0	0	
	잠수기	10	10	1	
	연안 어업	소 계	561	307	76
개량안강망		1	0	0	
선망		10	10	9	
통발		66	42	10	
조망		1	0	0	
선인망		2	2	0	
자망		167	97	38	
들망		11	10	4	
복합		303	146	15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95	44	31	
	정치성	16	10	2	
	새우조망	75	31	29	
	실뱀장어안강망	1	0	0	
	패류형망	3	3	0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남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91	334	108	
근해 어업	소 계	75	62	52	
	대형기저(외)	2	2	2	
	대형기저(쌍)	3	2	2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9	6	6	
	대형트롤	6	4	2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2	2	2	
	근해자망	2	1		
	근해안강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3	3	2	
	문어단지				
	근해통발	34	33	30	
	근해연승	1	1	1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6	1		
	잠수기	7	7	5	
연안 어업	소 계	269	242	37	
	개량안강망				
	선망	1	1		
	통발	45	40	9	
	조망	11	11	6	
	선인망				
	자망	109	104	13	
	들망	5	5		
	복합	98	81	9	
구획 어업	소 계	44	28	17	
	정치성	36	21	12	
	새우조망	8	7	5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소 계	3	2	2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기타	어획물운반선	2	1	1	
	양식장관리선	1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북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93	84	38	
근해 어업	소 계	18	16	11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3	2	2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2	2	1	
	근해안강망	1	1	1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1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연승	7	6	2	
	근해형망	4	4	4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74	67	27	
	개량안강망	13	11	3	
	선망				
	통발	1	1		
	조망	2	2	2	
	선인망				
	자망	40	35	11	
	들망				
	복합	18	18	11	
구획 어업	소 계	1	1		
	정치성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북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16	143	81	
근해 어업	소 계	42	36	14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기저	4	2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5	3	1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26	25	9	
	근해자망	6	5	3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1	1	1	
	연안 어업	소 계	174	107	67
개량안강망					
선망		1	1	1	
통발		9	1	1	
조망					
선인망					
자망		156	101	64	
들망					
복합		8	4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0	0	0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충남도)

충청남도(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03	218	125	
근해 어업	소 계	70	52	47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1	1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6	5	3	
	근해안강망	33	26	26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문어단지				
	근해통발	5	5	5	
	근해연승				
	근해형망	25	15	13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20	163	78	
	개량안강망	34	28	18	
	선망	44	41	26	
	통발	5	5	3	
	조망	3	3	3	
	선인망				
	자망	91	62	20	
	들망				
	복합	43	24	8	
구획 어업	소 계	13	3		
	정치성	13	3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울산시)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38	11	9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 어업	소 계	6	5	5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3	3	3	
	근해자망	3	2	2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0	6	4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8	2	1	
	조망				
	선인망				

[부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자망	13	3	2	
	들망				
	복합	9	1	1	
구획 어업	소 계	2			
	정치성	2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기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43	31	26	
근해 어업	소 계	5	5	5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1	1	1	
	근해안강망	2	2	2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2	2	2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8	26	21	
	개량안강망	11	11	11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15	12	8	
	들망				
	복합	12	3	2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강원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17	89	72	
근해 어업	소 계	25	19	13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5	2	1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12	10	7	
	근해자망	2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안강망				
	근해붕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4	4	3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2	2	2	
연안 어업	소 계	89	68	58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81	67	58	
	들망				
	복합	8	1		
구획 어업	소 계	3	2	1	
	정치성	2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제주도)

(2009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3	14	12	
근해 어업	소 계	12	10	10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1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1	1	1	
	근해통발				
	근해연승	10	9	9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11	4	2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2	2	2	
	들망				
	복합	9	2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총괄)

(2010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284	1004	537	
근해 어업	소 계	294	206	164	
	대형기저(외)	10	4	4	
	대형기저(쌍)	10	2	2	
	동해구기저	6	6	3	
	서남구기저(외)	6	2	2	
	서남구기저(쌍)	3	0	0	
	대형트롤	13	5	3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트롤	2	0	0	
	대형선망	7	2	1	
	소형선망	34	23	18	
	근해채낚기	45	41	33	
	근해자망	51	33	30	
	근해안강망	17	14	13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4	3	2	
	문어단지	1	1	0	
	근해통발	34	36	32	
	근해연승	18	17	13	
	근해형망	28	13	5	
	기선권현망	1	0	0	
	잡수기	4	4	3	
연안 어업	소 계	900	731	347	
	개량안강망	47	35	29	
	선망	37	31	17	
	통발	98	93	41	
	조망	12	7	5	
	선인망	0	0	0	
	자망	481	392	225	
	들망	2	2	0	
	복합	223	171	30	
구획	소 계	90	67	26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어업	정치성	39	25	6	
	새우조망	41	36	19	
	실뱀장어안강망	5	1	0	
	패류형망	5	5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부산시)

(2010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57	21	16	
근해 어업	소 계	33	8	8	
	대형기저(외)	3	1	1	
	대형기저(쌍)	7	2	2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9	2	2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6	1	1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3	2	2	
	근해자망	5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4	23	8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5	5	4	
	조망				
	선인망				
	자망	11	10	4	
	들망				
	복합	8	8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인천시)

(2010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52	38	31	
근해 어업	소 계	25	17	13	
	대형기저(외)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기저(쌍)	2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1	1		
	소형선망	23	14	11	
	근해채낚기	1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2	2	
	근해연승				
	근해형망	5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6	20	18	
	개량안강망	5	1	1	
	선망	2	2	1	
	통발				
	조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선인망				
	자망	17	16	15	
	들망				
	복합	2	1		
구획 어업	소 계	1	1		
	정치성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총괄)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769	622	315	
근해 어업	소 계	177	112	89	
	대형기저(외)	4	1	0	
	대형기저(쌍)	16	7	7	
	동해구기저	1	1	0	
	서남구기저(외)	1	0	0	
	서남구기저(쌍)	1	0	0	
	대형트롤	7	3	1	
	동해구트롤	7	5	3	
	대형선망	0	0	0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소형선망	20	4	2	
	근해채낚기	22	20	17	
	근해자망	42	34	32	
	근해안강망	11	6	4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1	1	1	
	문어단지	1	1	0	
	근해통발	15	13	12	
	근해연승	4	4	3	
	근해형망	15	7	2	
	기선권현망	4	0	0	
	잠수기	5	5	5	
연안 어업	소 계	539	491	219	
	개량안강망	36	32	14	
	선망	9	6	1	
	통발	54	50	24	
	조망	9	5	3	
	선인망	0	0	0	
	자망	301	278	155	
	들망	2	2	1	
	복합	128	118	21	
구획 어업	소 계	53	19	7	
	정치성	27	8	5	
	새우조망	17	6	1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실뱀장어안강망	1	1	0	
	패류형망	8	4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부산시)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53	29	14	
근해 어업	소 계	30	7	6	
	대형기저(외)	2	1		
	대형기저(쌍)	10	3	3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4	1	1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9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3	1	1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2	1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23	22	8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2	2	1	
	조망				
	선인망				
	자망	13	13	7	
	들망				
	복합	8	7		
구획 어업	소 계	1	1	1	
	정치성	1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인천시)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24	19	14	
근해 어업	소 계	15	12	10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2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10	10	9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1	1	1	
	문어단지	1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1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8	6	3	
	개량안강망	3	2	1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4	3	2	
	들망				
	복합	1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1	1	1	
	정치성	1	1	1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남도)

(2011년 6월현재)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32	99	27	
근해 어업	소 계	14	8	8	
	대형기저(외)	2	0	0	
	대형기저(쌍)	1	1	1	
	동해구기저	0	0	0	
	서남구기저(외)	0	0	0	
	서남구기저(쌍)	0	0	0	
	대형트롤	0	0	0	
	동해구트롤	0	0	0	
	대형선망	0	0	0	
	소형선망	0	0	0	
	근해채낚기	0	0	0	
	근해자망	7	5	5	
	근해안강망	3	1	1	
	근해봉수망	0	0	0	
	자리돔들망	0	0	0	
	장어통발	0	0	0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문어단지	0	0	0	
	근해통발	1	1	1	
	근해연승	0	0	0	
	근해형망	0	0	0	
	기선권현망	0	0	0	
	잠수기	0	0	0	
연안 어업	소 계	81	80	16	
	개량안강망	0	0	0	
	선망	3	3	0	
	통발	20	20	8	
	조망	0	0	0	
	선인망	0	0	0	
	자망	17	17	2	
	들망	2	2	1	
	복합	39	38	5	
구획 어업	소 계	37	11	3	
	정치성	17	2	1	0
	새우조망	17	6	1	0
	실뱀장어안강망	0	0	0	0
	패류형망	3	3	1	0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남도)

2011년 6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84	147	62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 어업	소 계	29	17	13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3	3	3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1			
	서남구기저(쌍)	1			
	대형트롤	3	2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4			
	근해채낚기	3	2		
	근해자망	4	4	4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3	3	3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4			
	잠수기	3	3	3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연안 어업	소 계	115	109	35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14	14	6	
	조망				
	선인망				
	자망	57	56	18	
	들망				
	복합	44	39	11	
구획 어업	소 계	40	21	14	
	정치성	33	14	8	
	새우조망	7	7	6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전북도)

(2011. 6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97	90	21	
근해 어업	소 계	4	2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1			
	근해안강망	1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1	1		
	근해형망	1	1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92	87	21	
	개량안강망	26	26	7	
	선망	3	2		
	통발	5	5	3	
	조망	4	2		
	선인망				
	자망	27	26	10	
	들망				
	복합	27	26	1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구획 어업	소 계	1	1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1	1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북도)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29	105	69	
근해 어업	소 계	28	24	19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1	1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5	3	2	
	대형선망				
	소형선망	1			
	근해채낚기	9	8	7	
	근해자망	7	7	6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 (지역별)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3	3	2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2	2	2	
연안 어업	소 계	101	81	50	
	개량안강망				
	선망	1			
	통발	6	3	3	
	조망				
	선인망				
	자망	94	78	47	
	들망				
	복합				
구획 어업	소 계	0	0	0	
	정치성				
	새우조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충남도)

충청남도(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80	55	38		
근해 어업	소 계	35	23	15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6	4	2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4	3	3	
	근해안강망	6	5	3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통발	6	5	5	
	근해연승				
	근해형망	13	6	2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7	28	21	
	개량안강망	7	4	6	
	선망	2	1	1	
	통발	1	1		
	조망	5	3	3	
	선인망				
	자망	17	15	10	
	낭장망				
	복합	5	4	1	
구획 어업	소 계	8	4	2	
	정치성	8	4	2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울산시)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17	13	10	
근해 어업	소 계	4	4	4	
	대형기저(외)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4	4	4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13	9	6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4	3	1	
	조망				
	선인망				
	자망	8	6	5	
	들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복합	1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경기도)

2011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4	3	3	
근해 어업	소 계	1	0	0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안강망	1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	3	3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2	2	2	
	조망				
	선인망				
	자망	1	1	1	
	들망				
	복합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강원도)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80	76	64	
근해 어업	소 계	12	12	11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2	2	1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10	10	10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63	63	53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62	62	52	
	들망				
	복합	1	1	1	
구획 어업	소 계	5	1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5	1		

불법어업단속 및 과징금 대체건수(제주도)

(2011년)

(단위 : 건)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총 계		8	6	6	
근해 어업	소 계	5	3	3	
	대형기저(외)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대형기저(쌍)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외)				
	서남구기저(쌍)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2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자리돔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3	3	3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				
연안 어업	소 계	3	3	3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1	1	1	
	들망				

[부 록 1]

구 분		전체단속 건수	과징금대체 가능단속건수	과 징 금 대체건수	비 고
	복합	2	2	2	
구획 어업	소 계				
	정치성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부 록 2]

과징금 산정 참고 입법례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 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p>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금융지주회사법	<p>제64조 (과징금)</p> <p>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1의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4의 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5의 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5의 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p> <p>5의 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p> <p>6. 삭제 <2009.7.31></p> <p>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p> <p>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p> <p>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p> <p>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p> <p>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p> <p>12.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p> <p>13. 삭제 <2007.8.3></p> <p>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p>
<p>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p>	<p>제 5 조 (과징금)</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p>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제 6 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7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2009.3.25></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1998.2.24, 2001.1.16></p> <p>③ 삭제 <1999.2.5></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삭제 <2007.4.13>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p>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p> <p>제28조 (과징금)</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1조의2 (과징금)</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4조의2 (과징금)</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p>제44조(과징금)</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p>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p>제11조 (과징금)</p> <p>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p> <p>② 삭제 <2004.1.20></p> <p>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p> <p>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08.12.19></p>
의료급여법	<p>제29조 (과징금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p>
전기통신사업법	<p>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p> <p>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은행법	<p>제65조의3 (과징금)</p> <p>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p> <p>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p> <p>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p> <p>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p> <p>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이하</p> <p>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p> <p>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p> <p>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p> <p>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p>	<p>제14조 (과징금)</p> <p>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6.8></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8></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p> <p>[전문개정 2009.1.30]</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제349조 (과징금)</p> <p>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p> <p>②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p>	<p>제34조 (과징금)</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제 9 조 (과징금)</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p>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제25조의3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p>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1]</p>
<p>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p>	<p>제12조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p> <p>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법 률 명	금 액 산 정 방 법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4.28][시행일 : 2011.10.29]</p>

[부 록 3]

교육기관 관련 참고 입법례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30,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23호, . 3.29,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9]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11. 3.29, 일부개정]</p>
<p>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p> <p>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전문개정 2009.3.16]</p> <p>제24조의3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전문개정 2009.3.16]</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30,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23호, . 3.29,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9]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11. 3.29, 일부개정]</p>
	<p>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p> <p>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전문개정 2009.3.16]</p> <p>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p> <p>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p> <p>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p> <p>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p> <p>5.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p> <p>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p> <p>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9.3.16]</p>	

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p>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 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p>		<p>제1조의4 (인권교육) ① 정신 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부 록 3]

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p>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 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 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3.20]</p>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30, 일부개정]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p>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30, 일부개정]</p>
<p>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p> <p>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p>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p>	<p>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설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5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추는 것 2. 강사기준 <p>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p> 3. 운영기준 <p>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 	

[부 록 3]

<p>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30, 일부개정]</p>
<p>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 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 관 또는 시설</p> <p>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 되는 기관 또는 시설</p> <p>[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1.12.9] 제74조</p>		

<p>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19, 일부개정]</p>
<p>제30조 (검사원의 교육) ① 제 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은 매년 식품위 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p>		<p>제30조 (검사원 등의 교육기 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다.</p> <p>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p>

<p>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19, 일부개정]</p>
<p>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p>		<p>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원이 소속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 관련 법규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원: 매년 21시간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p>
<p>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p>		<p>제 6 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p>
<p>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p> <p>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p> <p>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p>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p>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p>
		<p>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p> <p>제 7 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p>

[부 록 3]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p>
		<p>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10. 5.25] [법률 제10312호, 2010. 5.25,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일부개정]</p>
<p>제 7 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p>	<p>제 3 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p>	<p>제 5 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10. 5.25] [법률 제10312호, 2010. 5.25,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일부개정]</p>
<p>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38조에 따른 환경보건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p>	<p>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p>
<p>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p>	<p>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p>
<p>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게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p>	<p>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p> <p>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p> <p>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p> <p>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09.7.30]</p>	<p>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p> <p>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12></p> <p>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p> <p>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p> <p>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6호, 2011. 3.29, 일부개정]</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p>	
<p>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p>	<p>제4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6호, 2011. 3.29, 일부개정]</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p>	
	<p>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 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에서 이동 <2011.10.10>]</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 1] [법률 제10520호, 2011. 3.30, 일부개정]</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10호, 2011. 3.30, 일부개정]</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 4] [여성가족부령 제20호, 2011.10. 4, 일부개정]</p>
<p>제 4 조 (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 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 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 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p>	<p>제 2 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 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 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 1] [법률 제10520호, 2011. 3.30, 일부개정]</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10호, 2011. 3.30, 일부개정]</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 4] [여성가족부령 제20호, 2011.10. 4, 일부개정]</p>
	<p>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p> <p>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p>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p>	

[부 록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 1] [법률 제10520호, 2011. 3.30,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10호, 2011. 3.30,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 4] [여성가족부령 제20호, 2011.10. 4, 일부개정]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 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 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부 록 4]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

부산시

과징금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어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면 어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식함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1. 근해어업

- 다수의 선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므로 어업정지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선원 해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능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실정이며
- 과징금 대체가 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휴어기가 도래될 때 소송을 취하하고 어선을 계류함으로서 행정벌(어업정지)의 취지를 무용하게 하고 행정적 경제적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함
 - 행정기관 :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 어업인 :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취하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경제적 손실 초래
- 따라서 최근 일정기간(3년 정도)의 업종별 평균어획고 등에 기초한 “1일당 과징금의 적정금액 산출 용역” 등을 거쳐 과징금의 상향 조정으로 행정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 수산업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 역시 행정소송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2~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연안어업

- 가족 또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므로 어업정지로 인한 선원 해체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반면, 연안 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영세할 뿐 아니라 어업정지 기간의 어획고가 과징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 최근 일정기간(3년 정도)의 업종별 평균어획고 등에 기초한 “1일당 과징금의 적정금액 산출 용역” 등을 거친 후 과징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현실태

-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면허·허가어업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1996. 12월 제정 이후 2003. 11월 개정하여 약 30%상향 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변동 사항 없음
- 어한기를 제외하고 대다수 어업인이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음

문제점

- 과징금제도를 악 이용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매년 반복, 자행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
- 업종 간 이기적 사고로 타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원하고, 본인이 소유한 업종은 과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으며 민원야기
- 수산물이 일시적 다량 출몰하는 시기에 불법어업이 집중되므로 과징금 납부액보다 월등한 어획고를 올림으로 과징금 제도에 대한 효과미흡
- 과징금 부과 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며 소재불명, 무 재산(채권하위순위 등)등 으로 체납사례 발생

개선 방안

-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경우 및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 납부 선택권 박탈하고 어업정지처분 강행

- 동일한 위반행위를 2년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 무면허·무허가(타 시·도 연안어선이 관할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경우포함)
 - 어선의 피랍방지 및 안전조업을 위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특정해역 내에서 출어등록을 미 이행한 경우 및 어업별 조업구역과 조업기간을 위반한 경우(근해어선에 한함)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현재 부과액의 30%이상 상향조정
 - 과징금 납부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 선납조치

경기도

- 과징금 미납부에 따른 체납 발생

- 과징금 부과일까지 미납부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함과 동시에 기존 어업정지 처분

강원도

1. 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성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업종별 부과 기준금액은 적정함

2. 과징금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

-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어업인들은 대부분 어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원하고 있음
- 근해어업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 하더라도 어획량이 많을 경우 손해 부분이 상당히 상쇄되므로, 연안어업 보다 근해어업의 경우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음
- 따라서 어업인들은 과징금 제도에 대해 연안어업에는 적용하되 근해어업 중 트롤 또는 기저, 근해채낚기의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개선의견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의 다음 각호의 조항에 조문 추가

⇨ 8항 추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사용제한)를 위반한 경우

- 추가사유

동해구 트롤 및 기저, 근해채낚기 등에 의한 공조조업 적발시 현행법규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조조업에 대한 인식이 해이

충청남도

- 현행 과징금 제도는 불법어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불법어업 근절차원에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전라북도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의 적정성 여부

- 선망과 형망, 조망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불법어업행위로 얻는 소득에 비하여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1개월 과징금이 1일 어획고에도 못미치는 실정임) 실효성이 없고 다른 영세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영세소규모 연안복합과 대규모 기업형 연안선망이 똑같이 1일 4만원임)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곤란할 경우 과징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어획고가 높은 업종 등은 현실에 맞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과징금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

- 일부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고 또한 불법어업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과징금 제도가 오히려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불법어

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징금제도 폐지 또는 금액을 대폭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 어획강도 및 어업소득이 높아 어업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업종(모든 근해어업, 연안어업중 선망,형망,조망,개량안강망 등)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폐지가 곤란할 경우 어획고 등을 감안, 과징금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
- 관리선의 경우에도 허가어선과 마찬가지로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있고 그 위반내용이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나 수산업법시행령 별표5에 관리선은 과징금 부과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과징금 대체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므로 면허어업(관리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요망
- 징수 과징금의 30%는 단속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단속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

□ 전라남도

□ 문제점 및 개선의견

Q. 과징금 제도 시행 전후의 불법어업(업종별 등) 증감여부

A.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매년 행정처분 건수는 약간 차이를 보이나,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감척사업에 따른 어선척수의 감소로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Q.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의 적정성 여부

A. - 근해어업의 경우 어획 위판고 대비 과징금은 현저히 적은편이며, 과징금대체 가능 행정처분의 경우 90%이상이 과징금 대체를 희망하며, 나머지 10%는 어기 철망시기로 주 포획 어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또는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어업정지 집행을 받고 있음

[부록 4]

- 연안어업의 경우 1~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어업자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과징금 대체 희망의견은 근해어업 대비 현저히 낮으며, 과징금을 어업정지일수×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획고가 적고 매일 조업을 하지 않는 영세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있음

Q. 과징금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

- A. - 근해어업의 경우 과징금 제도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대신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연안어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근해어업보다 적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어업정지일수로 과징금을 환산할 경우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어업인도 있음
- 또한, 연안어업의 경우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안강망이나 연안조망어업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복합어업도 모두 같은 1일 4만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Q. 기타 운영상 문제점 또는 개선의견

- A. - 근해어업의 경우 과징금 대체 후 또 다시 불법어업을 감행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함
- ⇒ 근해어업의 불법어업 재발 방지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반드시 필요함.
- 연안어업의 경우 어업별 어획강도 및 톤급별 과징금 부과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경상북도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적정 여부 : 부적정 (상향조정)

구분	업종	부과기준		사유
		현행	개정(안)	
근해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기선권형망	어업정지 1일 : 19만원	어업정지 1일 : 30만원	허가의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어업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

구 분	업 종	부 과 기 준		사 유
		현 행	개 정(안)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근해안강망	어업정지 1일 : 13만원	어업정지 1일 : 25만원	업시 어업소득에 비하여 과징 금의 부과금액이 매우 낮음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불법 어업 예방
	그 밖의 근해어업	어업정지 1일 : 6만원	어업정지 1일 : 10만원	
연 안 (구획)	모든 연안어업 모든 구획어업	어업정지 1일 : 4만원	어업정지 1일 : 6만원	

어업인들의 인식

- 어업소득이 높은 업종 일수록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대체 납부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 어자원 보호 및 죄 의식 없음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과징금은 수산업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납부토
록 규정되어 있음, 미납 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징수방법 또는 제재 조항이
없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와 동시 납부 또는 납부 기한내 과징금 미납할 경우 어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시 과징금 대상 제외
⇒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1차 위반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

경상남도

- 감척사업 시행에 따른 어선척수 감소로 불법어업 감소 추세이나, 면허 및 정
척성 구획어업은 불법어업 증가 또는 담보 추세

[부록 4]

- 계절별, 지역별 어획 어종에 따라 주조업시기가 정해져 있어, 동 시기에 조업이 불가할 경우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저소득자 등의 생계형 법령 위반사례가 많아 과징금제도 준치 필요

- 조업구역 위반등은 조업중 고의적인 행위보다는 어군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권현망, 새우조망 등)
- 어업현실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기사 면허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제주도

-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매해 감소 추세이며,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은 적정함.
- 조업불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과징금보다 어가경영에 부담이 되므로 과징금대체 가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함.